

중미 Central America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중미 Central America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힘든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19년 한국의 무역액은 3년 연속 1조 달러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역대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세계 시장을 누비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실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글로벌 무역갈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 지역과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생형 FTA는 신흥 유망시장과 FTA를 통한 공조와 협력으로 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핵심 외교·경제정책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최근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중미와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영국·이스라엘·인도네시아와 협상을 타결하고 이외에도 메가 FTA 등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E-book에서는 최근 발효 또는 발효 예정인 신규 FTA 체결국 중 중미 5개국(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을 중심으로 한-중미 FTA의 활용부터 중미 최신 통관·통상환경까지 중미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정보를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로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 가운데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E-book은 중미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출처 원문이나 관련 법령,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중미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한-중미 FTA 활용 및 중미 현지의 최신 통관·통상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제 I 장 도입

| | |
|-------------------------|----|
| 1. 중미 국가별 개황 | 8 |
| 2. 중미 주요 사회·경제지표 | 20 |
| 3. 중미 최신 경제 동향 | 26 |
| 4. 중미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 37 |
| 5. 중미 기업경영환경 | 45 |
| 6. 중미 RTA 체결현황 | 52 |

제 II 장 중미 무역현황 및 한-중미 FTA 활용방안

| | |
|--------------------------------|----|
| 1.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무역현황 | 58 |
| 2. 한-중미 교역현황 | 66 |
| 3. 한-중미 FTA | 78 |
| 4. 한-중미 FTA 적용절차 | 91 |
| 5. 한-중미 FTA 수출유망품목 | 93 |

신규 협정 체결국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 중미편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5개의 중미 공화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구성함

제 III 장 중미 통관·통상환경

| | |
|------------------------------|-----|
| 1. 중미 5개국 통관제도 | 102 |
| 2. 중미 5개국 관세 종류 및 부과방법 | 112 |
| 3. 한-중미 관계 및 외교 현황 | 114 |
| 4.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 | 118 |

제 IV 장 우리기업의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애로와 그 대응방안

| | |
|-------------------------------|-----|
| 1.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 애로사항 | 126 |
| 2. 주요 애로 유형별 사례 및 대응방안 | 127 |

| | |
|------------|-----|
| 참고문헌 | 133 |
|------------|-----|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중미편
Central America



I

도입

제1절 중미 국가별 개황

제2절 중미 주요 사회·경제지표

제3절 중미 최신 경제 동향






제4절 중미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제5절 중미 기업경영환경

제6절 중미 RTA 체결현황

1

중미 국가별 개황

| 구분 | 파나마 |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 니카라과 |
|--------|---|---|---|--|---|
| 국기 |  |  |  |  |  |
| 면적 | 75,517km ² | 51,100km ² | 112,492km ² | 21,041km ² | 130,373km ² |
| 수도 | 파나마시티 (Panama City) | 산호세 (San Jose) | 테구시갈파 (Tegucigalpa) | 산살바도르 (San Salvador) | 마나과 (Managua) |
| 인구 | 389만명 | 500만명 | 924만명 | 648만명 | 620만명 |
| 민족 | 메스티소 60%, 흑인 13%, 백인 11%, 기타 15% | 메스티소 · 백인 84%, 물라토 7%, 원주민 2%, 흑인 1% | 메스티소 90%, 인디오 7%, 흑인 2%, 백인 1% | 메스티조 86%, 백인 3%, 인디헤나 0.2% | 메스티소 69%, 백인 17%, 흑인 9%, 인디언 5% |
| 언어 | 스페인어 | 스페인어 | 스페인어 | 스페인어 | 스페인어 |
| 종교 | 가톨릭 84%, 개신교 15% | 가톨릭 76%, 개신교 14% | 가톨릭 85%, 개신교 10%, 기타 5% | 가톨릭 60%, 개신교 35%, 기타 5% | 가톨릭 51%, 개신교 35% |
| 기후 | 열대우림 | 열대 | 아열대 | 아열대 | 열대 사바나 |
| 국체 | 공화국 | 공화국 | 공화국 | 입헌공화제 | 공화국 |
| 정부 형태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중심제 |
| 화폐 | 미국달러, (파나마 발보아) | 코스타리카 콜론 | 온두라스 렘피라 | 미국달러 | 니카라과 코르도바 |
| GDP | 668억불 | 618억불 | 251억불 | 270억불 | 125억불 |
| 한국 수출액 | 1,713백만불 | 119백만불 | 125백만불 | 149백만불 | 70백만불 |
| 한국 수입액 | 87백만불 | 225백만불 | 63백만불 | 39백만불 | 20백만불 |

자료 : 각국 주대한민국영사관, 인구(World bank, 2019), GDP(World bank;IMF 2019), 한국수출입액(K-stat, 2019)

» 파나마 개요 및 특징¹⁾

파나마 개요

- 파나마는 남한의 3/4 면적에 인구 약 389만 명을 가진 국가로 미주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북미 대륙과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임
 - 동시에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로 해운, 국제 비즈니스,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파나마(Panama)’는 나비와 물고기가 많다는 의미의 원주민 토착어로, 해산물이 풍부하고 나비, 곤충, 새 등 미주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열대밀림 생물이 서식하고 있기도 함

지세

- 북위 7~10도, 서경 77~83도 사이에 위치하여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영문 알파벳 “S”자를 왼쪽으로 눕힌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음
 - 산림 40%, 농토 25%로, 지대는 해발수면 지역에서부터 최고 3,475m의 Baru산에 이르기까지 평원 · 계곡 · 고원 · 산맥 및 산악지대로 구성됨

기후

- 연평균 25~35°C의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우기와 건기로 구분됨
 - (우기) 4~5월부터 12월까지, (건기) 12월부터 4~5월까지*
 -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으며, 우기에는 거의 매일 한 차례 강우

정치체제

- (국체) 입헌민주공화제
- (정체) 대통령 중심제(5년 단임)
- (대통령)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로드리게스(Juan Carlos Varela Rodriguez, 2014. 7. 1 취임)
- (부통령 겸 외교장관) 이사벨 생 말로 데 알바라도(Isabel Saint Malo de Alvarado, 2014. 7. 1 취임)
- (의회) 단원제(71석, 임기 5년)
- (독립일) 1821. 11. 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1903. 11. 3 콜롬비아로부터 독립

주요 교역품목

- (수출) 어류, 과일류, 목재류, 철강 등
- (수입) 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기기기 등

화폐

- **美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되 Balboa란 이름으로 부르며, 동전은 미국 동전과 자국 동전을 혼용(사실상 미화 사용국)**
 - 1 파나마 발보아(PAB) = 1 미국 달러(USD) = 1,164.41 대한민국 원(KRW)*
 - *2020. 9월 말 기준

산업구조

- **파나마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달리 3차 산업(파나마 운하,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한 중계 무역, 금융업, 편의치적선 등록 등)이 GDP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 비중은 3차 산업(서비스업) 약 73%, 2차 산업(제조, 건설, 광업) 약 25%, 1차 산업(농축산업) 약 2% 순임

» 코스타리카 개요 및 특징²⁾

코스타리카 개요

- **코스타리카는 한반도 1/4 면적에 인구 500만 명을 가진 국가로 북쪽으로는 니카라과, 남동쪽으로는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며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카리브해와 접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Costa Rica)’는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로 영어로 하면 ‘rich coast’이며, 실제로 해변이 아름다워 관광업이 크게 발달해 있음
 -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경험이 있어 국명이 스페인어식으로 만들어짐

지세

- 코스타리카는 3개의 화산과 넓은 계곡이 두 대양 사이에 펼쳐져 있는 형상으로 7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음
 - 7개 주는 San José, Alajuela, Cartago, Heredia, Guanacaste, Puntarenas, Limón 등임

기후

- 연중 열대성 기후로 강우량에 따라 건기(코스타리카인들에게 여름)와 우기(코스타리카인들에게 겨울)로 구분됨
 - (우기) 5월부터 11월까지, (건기) 12월부터 4월까지

정치체제

- (국체) 입헌민주공화제
- (정체) 대통령 중심제(4년 단임)
-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2018. 5. 8 취임)
- (부통령 겸 외교장관) 엡시 캠벨(Epsy Campbell Barr, 2018. 5. 8 취임)
- (의회) 로돌포 솔라노(Rodolfo Solano, 2020. 2. 1 취임)
- (독립일) 1821. 9. 15.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주요 교역품목

- (수출) 의료용 기기, 바나나, 파인애플
- (수입) 반도체, 고철, 커피 등

화폐

- 코스타리카 화폐인 콜론(colon)은 1896년 페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ISO 코드는 CRC, 기호는 ₡임
 - 1 코스타리카 콜론(CRC) = 0.0017 미국 달러(USD) = 1.93 대한민국 원(KRW)*

*2020. 9월 말 기준

산업구조

■ 코스타리카의 경제 · 산업구조는 1990년 자유무역지대 법을 제정한 이래 전통적인 농업 중심 구조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제조업

- 제조업 분야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11%가 종사하고 있으나, 2007년 이래 서비스업의 확장으로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추세임
- 자유무역지대는 전체 제조업 상품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 지역과 내수 경제와의 연계성은 아직 미약한 상황
- 2014. 4월 인텔(2013년 단인 기업으로 코스타리카 GDP의 6%, 수출의 20% 차지)이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조립공장 및 제품 실험실을 완전 철수함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재화 수출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 서비스

- 서비스 분야는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68.7%가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서 지정된 부분보다 더 개방되어 있는 수준임

○ 관광업

-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우림이 존재하며, 다양한 동식물 관찰이 가능하여 생태관광(Eco Tourism) 발달해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자연자원은 세계 5위에 해당

코스타리카 경제 · 산업 관련 주요 참고 사이트

- 대외무역부(COMEX) : <http://www.comex.go.cr/>
- 경제산업부(MEIC) : <http://www.meic.go.cr/>
- 투자청(CINDE) : <http://www.cinde.org/>
- 수출청(PROCOMER) : <http://www.procomer.com/>
- 중앙은행(Banco Central) : <http://www.bccr.fi.cr/>
- 주요 일간지 및 언론 – La Republica지(경제중심) : <https://www.larepublica.net> – El Financiero지(경제 중심 주간지) : <http://www.elfinancierocr.com/> – La Nacion지(주재국 최대일간지) : <https://www.nacion.com/>
- 주요입찰정보 – 관보 : <https://www.imprentanacional.go.cr/gaceta/> – 전자조달시스템(MER-LINK) : <http://www.mer-link.co.cr/> – Centralamerican Data(중미온라인비즈니스신문) : <http://www.centralamericadata.com>

자료 :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r-ko/>)

» 온두라스 개요 및 특징³⁾

온두라스 개요

- 온두라스는 한반도 1/2 면적에 인구 924만 명을 가진 국가로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 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카리브해, 남쪽으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음

지세

- 영토의 80%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을 따라 좁은 평원이 형성되어 있음
 - 그 중 수도인 테구시갈파는 해발 1,000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중앙고지와 태평양 쪽 사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징

기후

- 해안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하고, 중부산악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 건조한 온대성의 기후를 가짐

- 계절은 건기인 여름과 우기인 겨울*로 구분됨

*해안지방 겨울 연평균 기온은 20℃~40℃ 정도임

- (우기) 6월부터 11월까지, (건기) 12월부터 5월까지

- 수도 테구시갈파는 연중 온난(연평균 기온 통상 15℃~20℃)하나, 조석에는 다소 서늘함
- 강우량은 산악 및 계곡 지대 1,016mm, 카리브 해안 지대를 비롯한 강 유역은 2,540mm이며, 텔라(Tela) 지역은 3,604mm을 기록하기도 함

정치체제

- (국체) 입헌민주공화제
- (정체)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제)
-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알바라도(Juan Orlando Hernandez, 2014. 1. 27 취임, 2018. 1. 27 재취임)
- (외교장관) 리산드로 로살레스(Lisandro Rosales, 2019. 8. 1. 취임)
- (의회) 단원제(128석, 임기 4년)
- (독립일) 1821. 9. 15.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주요 교역품목

- (수출) 커피, 아연광, 연광, 의류 등
- (수입) 전선, 자동차 및 부품, 편직물, 의류 등

화폐

- 온두라스 화폐인 렘피라(스페인어: lempira)는 1931년, 페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렘피라'는 16C 초반 스페인의 식민통치에 저항했던 령카족의 수장인 렘피라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임

- 1 온두라스 렘피라(HNL) = 0.041 미국 달러(USD) = 47.27 대한민국 원(KRW)*

* 2020. 9월 말 기준

산업구조

- 온두라스는 바나나와 커피 수출에 매우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자연재해나 국제상품 가격 등락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지님
 - 그러나 최근 온두라스의 마킬라 산업 즉, 임가공수출(Maqiladora)은 미국의 1983년 중미·카리브지역무역특혜법(CBI)과 2000년 중미·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 시행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며 온두라스의 외화, 고용, 투자 창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엘살바도르 개요 및 특징⁴⁾

엘살바도르 개요

-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 1/10 면적에 인구 648만 명을 가진 중미의 소국임

지세

- 환태평양 조산 및 지진대의 일부로 국토의 90% 이상이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됨
 -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북부고원(해발 3,000피트 이상), 중앙고원(해발 2,000피트) 및 태평양 연안 저지대의 3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대다수의 인구는 중앙고원(전국토의 1/4)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기후

- 온화한 열대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것이 특징
 - (우기) 5월부터 10월까지, (건기) 11월부터 4월까지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15개 국가 중 하나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시급히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방식의 효율화, 탄소 발자국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의 현대화, 대규모 조림사업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엘살바도르 인구 95%가 지진, 화산폭발, 홍수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재난 데이터베이스(EMDAT)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매년 60억불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정치체제

- (국체) 입헌민주공화제
- (정체) 대통령 중심제(5년 단임)
-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2019. 6. 1 취임)
- (부통령) 펠릭스 울로아(Felix Ulloa, 2019. 6. 1 취임)
- (외교장관) 알렉산드라 힐 티노코(Alexandra Hill Tinoco, 2019. 6. 1 취임)
- (의회) 단원제(84석, 임기 3년)
- (독립일) 1821. 9. 15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주요 교역품목

- (수출) 의류, 커피, 설탕 등
- (수입) 정유 제품, 섬유 제품, 식료품, ICT 제품 등

화폐

- 엘살바도르는 2001년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한편, 미국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1 미국 달러 = 8.75 엘살바도르 콜론으로 정함
 - 8.75 엘살바도르 콜론(SVC) = 1 미국 달러(USD) = 1,164.41 대한민국 원(KRW)*
 - *2020. 9월 말 기준

산업구조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국개방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특히 마킬라(보세가공업) 제품 및 커피, 설탕 등의 농수산물을 주로 미국 및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중미국가에 수출함

■ 엘살바도르 내 최대 고용창출 산업은 섬유산업

- 2020년 현재, 엘살바도르 섬유업 직접 고용인원은 약 8만 명에 달하나 최근 엘살바도르 섬유 봉제협회(CAMTEX)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로 섬유업계 일자리가 약 2만개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니카라과 개요 및 특징⁵⁾

니카라과 개요

- 니카라과는 한반도 3/5배 면적에 인구 620만 명을 가진 국가로 중미 국가 중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음
 - 북동쪽은 온두라스, 남쪽은 코스타리카, 동쪽은 카리브해에 접하고, 남서쪽은 태평양에 접하고 있음

지세

- 주요 지역은 카리브해쪽의 저지, 태평양쪽의 저지 및 중앙산지 등으로 대별됨
 - 중미에서 국토 면적은 가장 넓으나, 인구 밀도는 가장 낮음

기후

-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는 사바나 기후로, 평균 기온은 24℃, 습도는 85% 정도로 한국의 하절기 복장이 적당함
 - (우기) 5월부터 11월까지, (건기) 12월부터 4월까지
 - 단, 니카라과의 기후는 고도에 따라 변하기도 함
 - 태평양 저지대는 기온은 높으나 공기는 상쾌하고 건기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 특징이고, 카리브해 연안은 건기가 비교적 짧으나(3월~5월) 늘 덥고 습해 강수량이 많으며, 북쪽의 산악 지형은 저지대보다 훨씬 시원함

정치체제

- (국체) 입헌민주공화제
- (정체) 대통령 중심제(6년 중임)
-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Saavedra, 2017. 1월 3선 연임)
- (부통령) 펠릭스 울로아(Felix Ulloa, 2019. 6. 1 취임)
- (외교장관) 데니스 몬카다(Denis Moncada, 2017. 1월 취임)
- (의회) 단원제(92석, 임기 5년)
- (독립일) 1821. 9. 15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주요 교역품목

- (수출) 커피, 소고기, 금속광물, 설탕, 씨앗 등
- (수입) 의약품, 금속철강, 기계, 석유, 플라스틱 등

화폐

- 니카라과 통화인 코르도바(스페인어: córdoba)는 1912년 페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코르도바'라는 이름은 니카라과를 건설한 스페인의 정복자인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짐

- 1 니카라과 코르도바(NIO) = 0.029 미국 달러(USD) = 33.43 대한민국 원(KRW)*

*2020. 9월 말 기준

산업구조

- 니카라과는 전통적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담배, 커피, 카카오, 어업, 소고기, 돈육, 가금육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 및 재배지역을 확대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대나무, 과일, 고무 생산 플랜테이션의 발전을 촉진 중임

-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재교육, 품질 관리 국가시스템의 강화 · 인적자원의 기술능력 배양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확대, 농림수산, 에너지 및 천연자원 등 분야의 기존 비교 우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Panama

Central America

2

중미 주요 사회 · 경제지표

» 중미 5개국 주요 사회 · 경제지표(2019)⁶⁾

| 구분 | 단위 | 파나마 |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 니카라과 |
|----------------------|------------------------|----------|----------|---------|---------|---------|
| GDP | current US백만\$ | 66,800 | 61,774 | 25,095 | 27,023 | 12,521 |
| GDP 성장률 | 연간 % | 3.0 | 2.1 | 2.7 | 2.4 | -3.9 |
| 1인당 GDP | current US\$ | 15,731.0 | 12,238.4 | 2,574.9 | 4,187.3 | 1,912.9 |
| 1인당 GDP 성장률 | 연간 % | 1.3 | 1.1 | 1.0 | 1.9 | -5.1 |
| 외국인직접투자 (FDI) 순유입 | BoP, current US백만\$ | 6,068 | 2,505 | 955 | 725 | 503 |
| 외국인직접투자 (FDI) 순유입 | GDP 대비 % | 9.1 | 4.1 | 3.8 | 2.7 | 4.0 |
| 경상수지 | GDP 대비 % | -5.2 | -2.4 | -1.4 | -2.1 | 6.0 |
| 소비자물가지수 (CPI) | 2010=100 | 122.1 | 128.8 | 150.3 | 111.2 | 162.7 |
| 인플레이션 (=CPI 상승률) | 연간 % | -0.4 | 2.1 | 4.4 | 0.1 | 5.4 |
| 공식 환율 | US \$ 당 (기간평균) | 1.0 | 587.3 | 24.5 | 1.0 | 33.1 |
| 수출단가지수 | 2000=100 | 115.9 | 121.1 | 115.6 | 130.4 | 133.8 |
| 수입단가지수 | 2000=100 | 72.8 | 119.6 | 71.5 | 63.1 | 55.4 |
| 상품 · 서비스 수출 | GDP 대비 % | ... | 33.8 | 40.2 | 29.5 | 45.1 |
| 상품 · 서비스 수입 | GDP 대비 % | ... | 32.3 | 56.4 | 47.6 | 50.0 |
| 농업 · 임업 · 어업 부가가치 | GDP 대비 % | 2.1 | 4.2 | 10.7 | 5.1 | 15.4 |
| 산업(건설 포함) 부가가치 | GDP 대비 % | 29.5 | 18.5 | 27.4 | 25.6 | 25.1 |
| 서비스 부가가치 | GDP 대비 % | 65.0 | 69.6 | 57.6 | 59.9 | 49.7 |
| 업무 용이성 점수 | 최저 0 ~ 최고 100 | 66.6 | 69.2 | 56.3 | 65.3 | 5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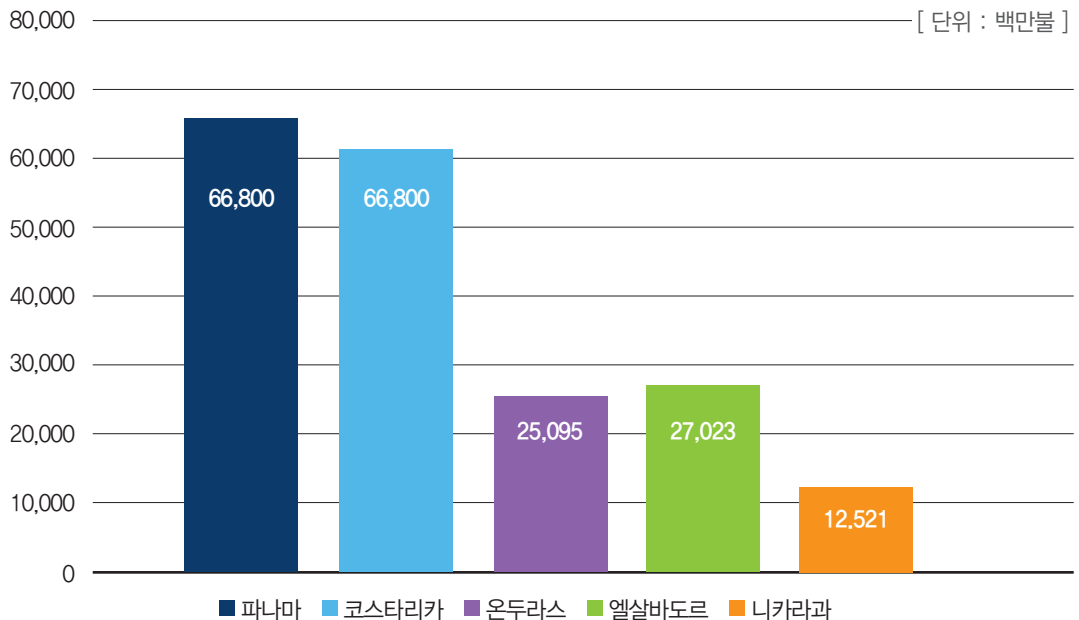
| 구분 | | 단위 | 파나마 |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 니카라과 |
|-------------------|------------|--------------------------------|-------|-------|-------|-------|-------|
| 창업소요기간 | | 일 | 6.0 | 23.0 | 42.0 | 16.5 | 14.0 |
| 기업이 지불하는 기타 세금 | | 상업이익의 % | 4.8 | 6.4 | 1.1 | 1.4 | 19.6 |
| 수출비용 | 국경규정 준수 | US \$ | 270.0 | 450.0 | 601.3 | 128.3 | 240.0 |
| | 문서규정 준수 | US \$ | 60.0 | 80.0 | 80.0 | 50.0 | 46.7 |
| 수입비용 | 국경규정 준수 | US \$ | 490.0 | 500.0 | 482.8 | 128.3 | 399.8 |
| | 문서규정 준수 | US \$ | 50.0 | 75.0 | 70.0 | 66.7 | 86.1 |
| 수출시간 | 국경규정 준수 | 시간 | 24.0 | 20.0 | 108.0 | 24.0 | 72.0 |
| | 문서규정 준수 | 시간 | 6.0 | 24.0 | 48.0 | 9.3 | 48.0 |
| 수입시간 | 국경규정 준수 | 시간 | 24.0 | 80.0 | 96.0 | 36.0 | 72.0 |
| | 문서규정 준수 | 시간 | 6.0 | 26.0 | 72.0 | 13.3 | 16.0 |
| 여성 인구 | | 전체 인구 대비 % | 49.9 | 50.0 | 50.0 | 53.2 | 50.7 |
| 남성 인구 | | 전체 인구 대비 % | 50.1 | 50.0 | 50.0 | 46.8 | 49.3 |
| 인구 증가율 | | 연간 % | 1.7 | 1.0 | 1.6 | 0.5 | 1.2 |
| 노동인구 | | 만 명 | 207 | 247 | 461 | 279 | 305 |
| 농업고용 | | 총고용 대비 % (ILO 추정치) | 14.0 | 12.1 | 30.3 | 16.3 | 30.7 |
| 산업고용 | | 총고용 대비 % (ILO 추정치) | 18.7 | 19.8 | 20.0 | 22.1 | 15.9 |
| 서비스고용 | | 총고용 대비 % (ILO 추정치) | 67.3 | 68.1 | 49.8 | 61.6 | 53.4 |
| 15~64세 인구 | | 전체 인구의 % | 64.9 | 69.0 | 64.0 | 64.7 | 64.7 |
| 노령인구 부양비율 | | 근로연령인구 대비 % | 12.8 | 14.3 | 7.5 | 13.1 | 8.4 |
| 실업률 | | 총 노동인구의 % (ILO 추정치) | 3.9 | 11.9 | 5.4 | 4.1 | 6.8 |
| 청년 실업률 | | 15~24세 노동인구의 % (ILO 추정치) | 10.0 | 30.5 | 10.3 | 9.6 | 13.0 |

자료 : 세계은행 DataBank(검색일: 2020. 9월)

» 중미 5개국 주요 사회·경제지표 해석(2019)⁷⁾

- 2019년, 중미 5개국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GDP는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시장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국가 간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자주 사용됨
 - 따라서 중미 5개국의 경제규모는 GDP 규모 순과 동일한 파나마 >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니카라과 순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GDP의 연간 증감률을 나타내는 GDP 성장률에서도 파나마는 3.0%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니카라과는 -3.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임

중미 5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19)



자료 : 세계은행 DataBank(검색일: 2020. 9월)

■ 2019년, 파나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부문에서도 중미 5개국 중 최고액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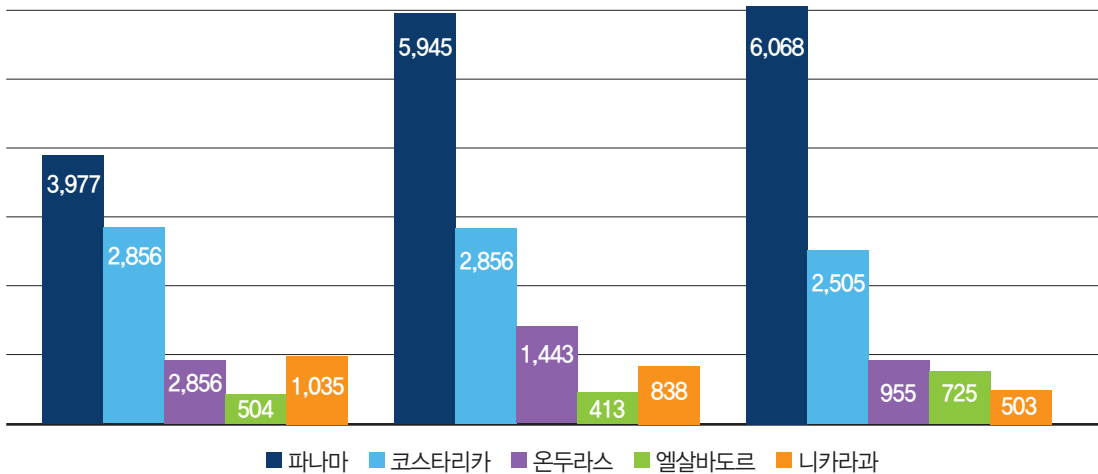
○ 2019년 파나마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약 60억불에 해당하며, 이는 파나마 GDP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임

- 이뿐만 아니라 파나마는 중미 5개국 중 유일하게 최근 3년 연속 FDI 규모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 이처럼 중미 국가 중 파나마가 특히 세계 여러 국가에서 투자 중심지로 이목을 받고 있는 까닭은 미국 및 중남미 각국에 뻗어 있는 코파(Copa)항공노선, 운하를 활용한 수륙운송의 원활화, 달러화 사용과 금융서비스의 발달, 기타 관광 개발지역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 추이('17-'19)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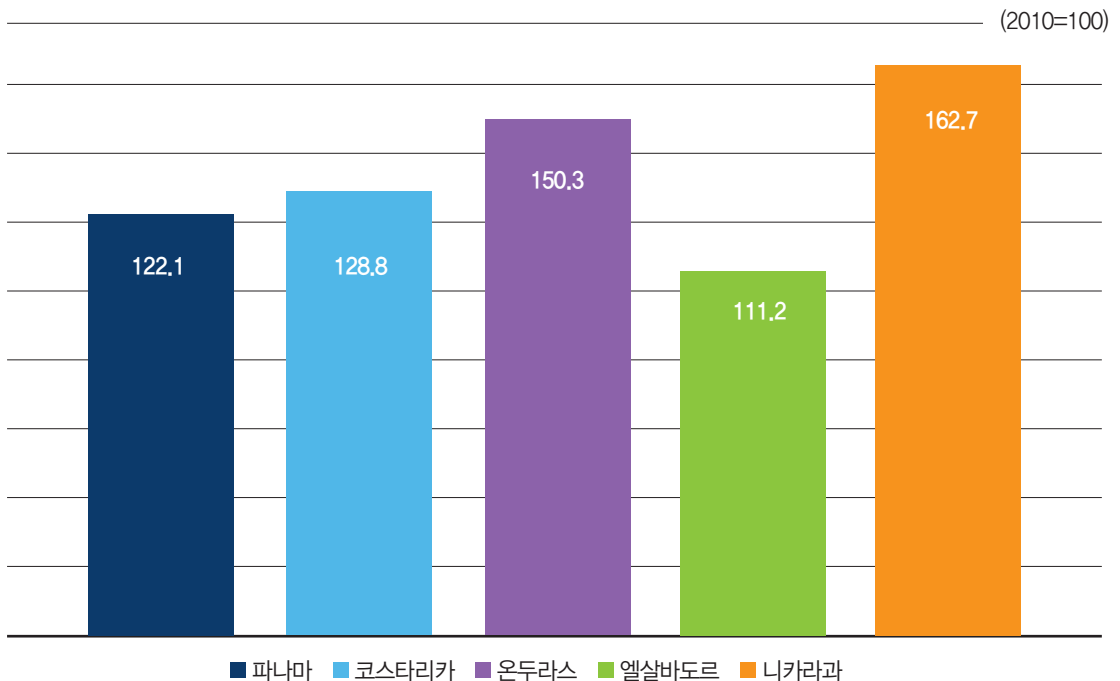


자료 : 세계은행 DataBank(검색일: 2020. 9월)

■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CPI) 부문에서는 니카라과가 16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주로 가게에서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변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수화하여 물가변동이 국민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지표를 말함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미 5개국의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니카라과 > 온두라스 > 코스타리카 > 파나마 > 엘살바도르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니카라과의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62.7(2010=100)로, 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인 2010년에 비해 2019년 니카라과의 물가수준이 62.7%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함

중미 5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현황('19)



자료 : 세계은행 DataBank(검색일: 2020. 9월)

주요 사회 · 경제지표 용어의 의미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함. FDI 유출입 규모는 무역규모와 함께 각국 경제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 **경상수지** :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됨
-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 소비자가 일상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도매물가 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
- **인플레이션(=CPI 상승률)** :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로, 인플레이션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현상을 동시에 가져옴
- **수출 · 입 단가지수** : 수출입 통관자료를 토대로 중량 단위당 수출입 가격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 **산업별 GDP 대비 부가가치** : 일정기간 중 해당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이 당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것으로 부가가치율일 높은 산업이 해당 국가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령인구 부양비율** : 15~64세 인구(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만 15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
- **청년실업률** : 전체 실업자 중 청년(15~29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중미 최신크제 동향

▶▶ 파나마 경제 동향⁸⁾

- '20.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월별경제활동지수(IMAE)에 따르면 파나마는 '20.1~5월간 전년 대비 -1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대비 월별 경제 성장률: 1월(2.49%), 2월(1.63%), 3월(0.58%), 4월(-34.65%), 5월(-40.9%)

- 감사원은 파나마 경제성장률의 급락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영리활동 잠정 중단 조치를 꼽음
- 산업 분야별로는 △건설업, △호텔 및 요식업, △항공운송업, △채굴 및 광업, △제조업, △무역 부문의 성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어업, △금융 중개업, △부동산업 또한 감소세를 보였고, 반면 △정보통신, △확장운하 운영, △바나나 생산, △육우 생산은 성장세를 기록함
 - 특히, 파나마 경제에서 주된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는 관광업과 건설업계의 위축으로 약 27만 7,000여 개의 근로 계약이 중지되었으며 이 가운데 3만 5,500개의 계약만이 재개됨 ('20. 8월 기준)
- 이후 금년도 파나마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보다 더 악화되어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 9월, 파나마 Cortizo 대통령은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법을 재가함
 - 지난 8.4.(목), 파나마 국회가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안 3차 심의를 진행, 최종 승인한데 이어 최근 파나마 Cortizo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
 - EMMA 제도는 △제조업, △경공업, △수리·유지 보수, △조립 및 운송 부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제도임
 - (주요혜택) 관련 부문 기업은 △대학 내 훈련 프로그램 마련, △기술 양성 센터 설립 등 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에 동의할 경우, 동 법에 의거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이후 5%징

수), △급여비과세, △투자 보증, △관세 지원, △외국인 직원 취업 허가(5년마다 갱신) 및 △자유무역지대포함 파나마 전 지역 내 기업 설립 가능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Ramón Martínez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장관은 EMMA 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장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와 파나마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또한 Ramón Martínez 장관은 동 법안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과 연계성을 활용하고 △금융, △이민, △관세 부문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파나마 정부는 오래 전부터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과 파나마 운하를 바탕으로 해운업 등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허브 역할을 공고히 해오고 있음
 - 특히 2007년에 마련한 다국적기업본부(SEM)제도를 통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바, 현재까지 16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파나마에 지사를 설립, 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EMMA제도 또한 외국인 투자 및 교역 부문관련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정책이 병행되고 파나마 정부가 개방 경제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파나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파나마, 채권 발행으로 26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 파나마 정부는 지난 9.22.(화) 세 종류의 채권 발행을 통해 25억 7,5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힘
 - △2032년 만기 국제채(채권 표면이자율: 2.25%)신규 발행으로 12억 5,000만 달러, △2060년 만기 국제채(3.28%) 재발행으로 10억 달러, △2026년 만기 국내채(2.77%) 재발행으로 3억 2,500만 달러를 마련
 - 금번 채권 발행은 지난 '20. 3월, 25억 달러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이래 두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세수 급감에 기인함
- 파나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파나마 정부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바 있으며 금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은 국가 예산 및 부채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환매에 사용하여 만기도래채 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힘 *

*지난 3월 채권 발행 이외에도 파나마는 IMF 측의 신속금융제도(RF)를 통해 5억 5,100만 달러, 미주개발은행(DB)에서 7억 달러, 타 개발은행을 통해 5,000만 달러를 마련함. 아울러 국부펀드에서 13억 달러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

- 현재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파나마 국채 평가순위는 이전 위기의 수준을 넘어 약 40년 전으로 수준으로 강등된 상황이나, 금번 국채 발행으로 중기적 차원에서 파나마 공공재정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파나마 운하청(ACP), 2021년 회계연도 운영 계획 및 예산안 제출

- 오는 '20. 10. 1일부터 파나마 운하청(ACP)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Aristides Royo 파나마 운하부 장관 및 Ricaurte Vásquez 운하청장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및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함*

*운하청의 회계연도는 여타 부처와는 달리 10.1.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9.30.에 끝남

- Vásquez 파나마 운하청장은 예산위원회에서 운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파나마 운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에는 일일 36척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일 33척의 통항이 예상되고 2021년 회계연도 동안 1만 2,059척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것이라 설명함

- 아울러 총 물동량은 올해 회계연도보다 6,400만 톤(CP/SUAB) 적은 4억 2,900만 톤(CP/SUAB)으로 예상된다고 발표('20년 회계연도 통항 선박수: 1만 3,579척)
- 물동량(통항 선박 톤수)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운하청이 올해 2월 도입한 '물 이용 요금'*을 바탕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록적으로 적은 강우량 문제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운하청은 지난 2월부터 동 요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통항 일정에 기록되어야 하고 항행 선박의 규모와 운하 수위에 따라 요금 결정됨

- 또한 Vásquez 파나마 운하청장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프로젝트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Cocolí 태양광 발전소 건설, △기상 레이더 설치, △크레인 교체 등에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설명함
- 운하청이 예상하는 2021 회계연도 운하 수입은 곧 마무리 되는 2020 회계연도(2019.10.1.-2020.9.30.) 예상치보다 0.8% 감소한 33억 890만 달러이며, 국고 기여액은 3.5% 적은 17억 6,030만 달러임
 - 운하청은 2021년도 국고 기여액 감소와 관련하여 2020 회계연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동 액수는 운하 운영 역사상 3번째로 많은 액수라는 점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파나마, 2020년 외국인투자매력지수(GAI) 하락

- 유럽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유러피안 하우스 암브로세티(The European House-Ambrosetti)가 '20. 9월 발표한 '2020 글로벌 외국인투자매력지수(Global Attractiveness Index 2020,GAI)에서 파나마는 26.87점으로 평가 대상 144개국 중 70위를 기록함
 - 파나마는 전체 순위에서 작년보다 11단계 하락했지만 중미 국가 중에서는 1위, 중남미 전체에서는 5위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중남미 국가별 투자 매력도 순위

| 국가명 | 순위 (전체) | 지수 | 국가명 | 순위 (전체) | 지수 |
|------------|------------|--------------|-------|---------|-------|
| 브라질 | 41위 | 44.74 | 콜롬비아 | 91위 | 22.51 |
| 멕시코 | 43위 | 43.46 | 아르헨티나 | 92위 | 22.15 |
| 칠레 | 46위 | 39.80 | 파라과이 | 95위 | 20.32 |
| 우루과이 | 66위 | 27.56 | 과테말라 | 104위 | 16.87 |
| 파나마 | 70위 | 26.87 | 볼리비아 | 116위 | 12.36 |
| 도미니카 공화국 | 74위 | 26.46 | 온두라스 | 120위 | 11.13 |
| 페루 | 82위 | 24.87 | 엘살바도르 | 122위 | 10.88 |
| 에콰도르 | 84위 | 24.42 | 니카라과 | 130위 | 9.34 |
| 코스타리카 | 88위 | 23.17 | 베네수엘라 | 137위 | 5.74 |

주 : 글로벌 상위 10개국(순위, 지수) : 독일(1위, 100), 미국(2위, 99.61), 싱가포르(3위, 90.51), 일본(4위, 90.06), 영국(5위, 89.17), 홍콩(6위, 87.89), 중국(7위, 82.13), 캐나다(8위, 80.75), 대한민국(9위, 80.06), 네덜란드(10위, 79.86)

자료 : 2020 글로벌 외국인투자매력지수(Global Attractiveness Index 2020, GAI)

- Irene Giménez 투자 분석가는 2020년 파나마의 순위 하락에 대해 경제 활동 위축 상황 및 사회·문화적 부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함
 - 이와 함께 국가별 매력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지수(세계경제포럼), △Doing Business 지수(세계은행) 및 관련 연구 자료들도 모두 파나마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치들이 파나마 내 모든 회사들에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파나마 실업률 문제 심화

-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영리 활동 제한 및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20년 말 실업자가 53만 명으로 전체 실업률은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최근 Doris Zapata 파나마 노동인력개발부(MITRADEL) 장관도 '20년 파나마 실업률이 25%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최근 5년간 파나마 실업률 증가 추이 | |
|----------------------|--------|
| 연도 | 실업률(%) |
| 2019 | 7.1 |
| 2018 | 6.0 |
| 2017 | 6.1 |
| 2016 | 5.5 |
| 2015 | 5.1 |

자료 : La Prensa紙(*20.09.08)

- 또한 René Quevedo 노동 분야 전문가는 금년 말까지 특히 30세 이하 청년 13만 5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이와 더불어 15~29세 청년들은 △4명 중 1명이 직장인, △5명 중 3명이 실업자, △4명 중 1명이 Nini족(NEET족)이며 △신규 일자리 27개 중 1개만 청년층에게 돌아갔다는 '19년 통계자료와 함께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일자리의 51%가 청년층 일자리이기에 관련 수치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Augusto García 경제학자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는 1, 2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률과 비공식 노동 비율이 급증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정을 바탕으로 1,2차 산업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한다고 언급함

» 코스타리카 경제 동향⁹⁾

■ '20년 5월, 코스타리카 정부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 지난 5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Alvarado 대통령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스타리카 경제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20. 5월) | |
|-------------------------------|---|
| 구분 | 내용 |
| ①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 | 위생, 사회적 거리유지, 방역 및 수용인원 제한 지침을 준수, 기간별 4단계에 걸친 점진적 제한 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 |
| ② 근로자본 마련을 위한 투자 | 3개 공립은행이 특혜 금리를 적용, 창업 및 사업재개 희망자 대상 총 9천억 콜론(16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 |
| ③ 공공부문 투자 | 수도권 전기열차를 포함 인프라, 교육기관확장, 주택건설, 국립병원 신축 등에 2020-21년간 3.1조 콜론(55억달러)을 투자, 10만 9,000개 고용 창출 |
| ④ 생산부문 지원 | 국립직업훈련원(INA)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투자 촉진 및 비용절감을 위한 수속절차 간소화, 영업허가 신청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설 |
| ⑤ 투자 및 신사업 유치 | 기업지원 프로그램(Programa Alivio), 외국인 투자자 및 은퇴자 유치, 대마(Canamo) 생산 촉진, 복지·혁신·생명과학 중심국가로의 도약 |
| ⑥ 생산성 향상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설, 기술 활용을 통한 정밀 농업 프로그램(AGROINNOVA 4.0) 개시, 해상관광 활성화 등 관광상품 개발 업계 종사자 역량강화* |

자료 :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r-ko/index.do>)

■ 코스타리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3억불 차관협정 체결

- 지난 9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National Endorsement and Guarantee Fund) 창설을 위해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3억불 차관협정을 체결함

(1) CABEI측 승인 및 재원

- CABEI는 '20년 7월, 「개발정책운용프로그램(Development Policy Operations Program)」에서 2.5억불, 「코로나19 및 경제재건 지원 및 대응 프로그램(Regional Program for Support and Preparedness for COVID-19 and Economic Reactivation)」에서 0.5억불을 이미 승인한 바 있음

- Dante Mossi 코스타리카 총재는 금번 차관제공은 코스타리카가 CABI 창설회원국의 지위에서 받은 최초의 차관이며,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언급함

(2) 코스타리카측 신용보증기금 창설

- 코스타리카 정부는 상기 CABI 차관 3억불을 주요기반으로 채무자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재건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키로 결정함
 - 이는 신용이 약한 업체의 신용을 보증하고 추가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 이사회가 승인한 7천억 콜론(12억불) 대출 지원에 활용될 것임. 약 18,000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함
-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코스타리카 재무부(HACIENDA)가 신탁기관이 되고 국가보험위원회(INS; National Insurance Institute)가 수탁기관이 됨
- 상기 보증기금은 3억불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승인 절차 완료 후, 금융감독원(Sugef; General Superintendency of Financial Entities)의 감독 하, 코로나19 대확산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제공될 것임

(3) 기대 효과

- Elian Villegas 코스타리카 재무장관은 금번 CABI측의 차관 제공으로 고용유지, 경제재건을 위한 보증기금을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으며,
- Pilar Garrido 경제정책기획부 장관은 금번 보증기금은 업체들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광, 교통, 무역 분야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요 분야에 신용재건, 업체 지원, 고용보호 등을 위한 핵심장치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CABI 차관은 코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언급함

■ 코스타리카 IMF 긴급자금 국회 승인 관련 동향

- '20년 7월, 코스타리카 Cubero 중앙은행장은 정부가 IMF의 대기성차관협정(SBA) 또는 확대신용자금(EFF) 옵션을 고려중임을 밝힘
- 또한 '20. 8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9월부터 IMF와 추가차관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 재차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IMF 5.08억불 긴급자금* 1차 의결이 8.18(화), 8.20(목)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됨

* 코 정부는 올해 4월 IMF로부터 긴급자금(IFR) 5.08억불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국회승인을 대기 중이었으며, 6월에는 IMF와 3년간 총 22.5억불의 대기성차관 논의를 공식화함(5.08억불 긴급자금은 연 이자율 1.55%, 차관기간은 총 5년, 상환유예기간은 3년으로 마지막 2년간 분기마다 변제조건임)

○ 코스타리카 IMF 긴급자금 국회 승인 관련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코스타리카 경제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20. 5월) | |
|-------------------------------|---|
| 날짜 | 내용 |
| 2020. 8. 4 | -코스타리카 국회 재무위원회(상임위)는 IMF 5.08억불 긴급자금을 △자금의 10%(5천만불)은 사회보장청(CCSS) 부채 상환 △90%(4,500만불)은 고이자자의 국채를 저이자자의 외국차관으로 변제하는 국가채무스왑(canje de deuda) 조건으로 승인함 |
| 2020. 8. 18 | -Marcelo Prieto 코스타리카 대통령실 장관은 IMF 5.08억불 긴급자금 승인이 정부의 우선 사업임을 감안, 동 건의 신속한 국회 승인을 위하여 기존에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던 10개의 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함(8.18자 La Nacion 보도) -코스타리카 국회는 총 57명 중 44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동 자금 승인 1차 의결을 진행하고 자 하였으나 소수당(PUSC, PIN 등) 및 무소속 의원들이 의결 전 논의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발의안을 상정, 찬성 24명, 반대 20명으로 부결*되면서 1차 의결 자체가 무산됨 *국회 의결정족수는 총 38명(총 국회의원 57명의 2/3) |
| 2020. 8. 20 | -동일한 발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찬성 24명, 반대 13명)되어 재차 1차 의결이 무산되었으며, 동건 관련 정부가 소수당 및 무소속의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이 의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Silvia Hernandez 코스타리카 재무위원장은 정부의 임시국회 상정 법안 철회는 미리 시작되었어야 하며 정부가 국가의 경제안정성 확보를 위한 IMF와의 22.5억불 대기성차관협상(SBA) 및 다자기구들과의 차관 협상이 동 긴급자금 승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와 전략 없이 머물러 있다고 비난함 |

자료 :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r-ko/index.do>)

○ 추후 IMF 긴급자금의 조속한 국회승인은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으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자금융기관(IDB, WB 등)의 차관을 융자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온두라스 경제 동향¹⁰⁾

■ 온두라스, 2020년 글로벌 매력도 지수 120위 기록

○ 온두라스는 전 세계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매력도 지수(GAI) 평가보고서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120위를 차지함

- 글로벌 매력도 지수(GAI)는 한 국가의 투자기회와 생산개발 능력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혁신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국가의 잠재력과 재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수임

○ 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41위), 멕시코(43위)와 칠레(46위)가 가장 높게 평가 되었으며 최하 위권에는 과테말라(104위), 볼리비아(116위), 온두라스(120위), 엘살바도르(122위), 니카라과(130위) 등이 차지함*

*세계 1위는 독일, 그 뒤로 미국 과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

○ 실제로 '20년 3월까지의 온두라스 외국인 직접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는 450만 달러 감소함

- 이에 온두라스 정부는 금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및 전략 등을 계획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사태로 인해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액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최근 온두라스 중앙은행(BCH)은 코로나 19로 인해 심화된 경기침체가 2022년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중앙은행(BCH)은 '20년 말 온두라스의 국내총생산(GDP)이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2021년도의 경제성장률은 4.5%, 2022년도에는 4%로 예상한다고 밝힘

○ 또한 Hugo Noe Pino 전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도가 되어서야 2019년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최근 5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로 다수의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음

- Pino 전 총재는 경제 재개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도산된 기업들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경기회복 속도도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힘

» 엘살바도르 경제 동향¹⁾

■ 2020년 상반기(1~7월) 엘살바도르 세수 크게 감소

- 최근 엘살바도르 재무부는 '20년 1~7월 간 납부된 세수는 총 28.55억불로 당초 전망치(35.15억불) 대비 18.7% 가량 크게 감소했다고 밝힘
 - 금년 세수는 전년 동기(32.33억불) 대비 11.7%(3.78억불) 감소한 수치로, 이 중 부가가치세는 2.13억불(-15.7%), 소득세가 1.35억불(-10.3%) 감소함
- 엘살바도르 Alejandro Zelaya 재무장관은 세수 감소 요인으로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생산 활동 마비 등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금년도 세수가 전년 대비 9.2억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중미재정연구소(ICEFI)는 엘살바도르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타격이 역대 국가 중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엘살바도르 각계 기관, 코로나 19로 인한 엘살바도르 경제 및 고용 위기의 지속 심화 전망

- 최근 엘살바도르 사회보장청(ISSS) 및 민영연금관리(AFP)는 가입자 수가 각각 '20년 3~5월간 64,022명 및 '20년 3~6월간 76,920명이 감소했다고 밝힘
- 한편 전국경제인연합(ANEP)은 코로나19 여파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실업자 수가 13만 8천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최근 미주개발은행(IDB)에서 발표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단기·장기·경기침체 장기화 등 시나리오별 각각 실직자 수(공식/비공식 근로자 포함)는 24만 8백 명, 43만4천명, 69만9천2백 명에 달하며 엘살바도르의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니카라과 경제 동향¹²⁾

- 19년 니카라과 경제분야 싱크탱크 COPADES는 최근 니카라과 경제는 침체 중에 있으며 당분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최근 COPADES는 '19년 니카라과 상반기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약 5% 하락했으며, 추후 니카라과 경기는 다음 요인들이 더해져 한동안 침체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출액 감소) '19년 니카라과 수출액이 국내 불황과 수출품 국제시세 하락으로 작년 대비 14% 감소한 21억 66백만불(자유무역공단 제외)을 기록
 - (수입액 감소) '19년 니카라과 수입액은 작년 대비 10.4% 감소한 46억 60백만불을 기록
 - (인플레이션 증가) '19년 니카라과 상반기 누적 인플레이션은 5.41%로 작년 대비 약 1.5%가 증가
 - (외환보유액 감소) '19년 6월 기준 니카라과 외환 보유액은 21억 7백만불로 '19년 1월 대비 1억 16백만불 감소

4

중미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읽기 전에

- 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 및 소비자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함
- 중미의 경우 중미통합체제(SICA) 및 중미경제통합사무국(SECA) 등을 통해 주요국들이 대부분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미 경제권 전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별로 상이한 일부 특성을 잘 파악하여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함

▶▶▶ 파나마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¹³⁾

- 파나마는 중미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아 높은 구매력을 가진 국가이지만, 동시에 빈부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함
 - 2019년 세계은행 기준, 파나마의 1인당 명목 GDP는 15,731달러로 중미 5개국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타남

*참고로 2019년 세계 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1,428.6달러,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1,762달러임(WB, 2019)

중미 5개국 연도별 1인당 GDP

| 국가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파나마 | 14,344.0 | 15,150.3 | 15,592.6 | 15,731.0 |
| 코스타리카 | 11,666.5 | 11,814.6 | 12,112.1 | 12,238.4 |
| 엘살바도르 | 3,806.0 | 3,910.3 | 4,067.7 | 4,187.3 |
| 온두라스 | 2,342.6 | 2,453.7 | 2,505.8 | 2,574.9 |
| 니카라과 | 2,107.6 | 2,159.2 | 2,020.5 | 1,912.9 |

자료 : 세계은행 data bank 'GDP per capita' (검색일 : 2020.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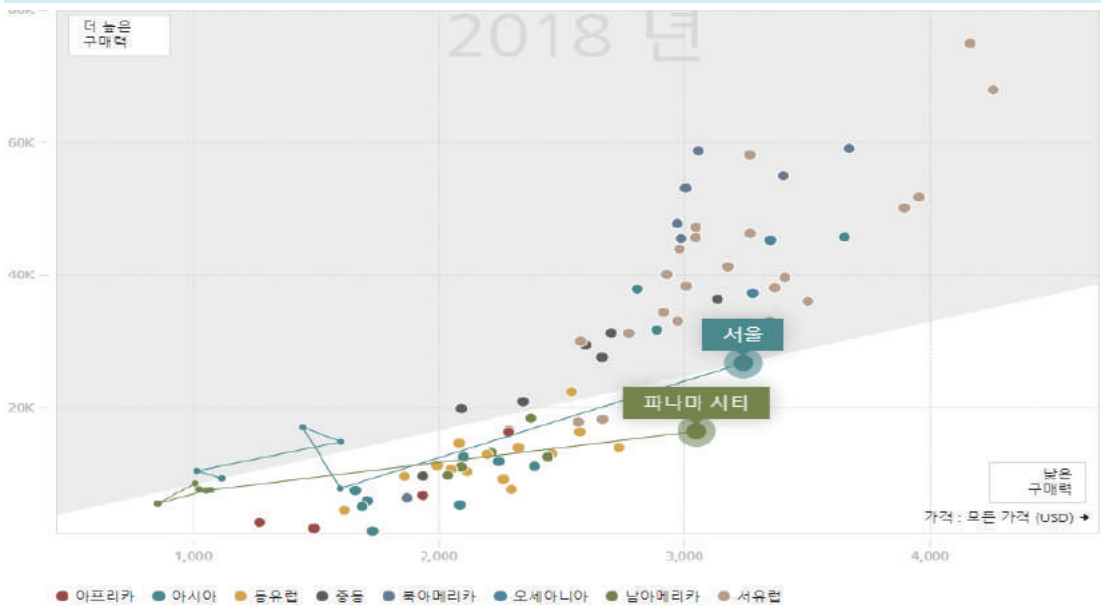
- 한편 스위스은행연합(UBS, 2018) 조사 결과에서 파나마시티는 세계 주요 77개 고비용 도시 중 21위를 차지했으며*, 비용-소득 간 상호관계를 알려주는 수익지표에서는 48위, 구매력 지수에서는 5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고비용 도시 주요 순위: 스위스 취리히(1위), 미국 뉴욕(5위), 일본 도쿄(6위), 영국 런던(8위), 프랑스 파리(12위), 스웨덴 스톡홀름(14위), 한국 서울(16위) 등(UBS, 2018).

- 또한 파나마시티는 2018년, 소득 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 브라질, 온두라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소득 불평등 국가로 평가된 바 있음(WB, 2018)

○ 이를 종합해보면 파나마의 비용-소득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파나마시티 및 서울의 구매력지수 비교(UBS, 2018)



자료 : Global cities ranking 2018, UBS (검색일자: 2020, 9월)

○ 이처럼 파나마는 심화된 빈부격차로 고객군이 상류층 및 중산층으로 철저히 양분되어 있는 특성을 지님

- 상류층의 경우 소비성향이 매우 높으며 고급품 위주의 구매패턴을 지니고 있고 중산층의 경우 가격 중심의 구매성향을 보임

▶ 따라서 성공적인 파나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타겟 고객군을 상류층과 중산층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미국식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미국 문화, 제품, 규격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 이는 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제품이 주도하는 남미시장의 특성과 대비되는 부분임

-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 다변화 영향으로 한국이나 일본산 제품이 파나마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음

- 특히 생활용품이나 소비재의 경우에는 품질은 다소 낮으나 가격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은 파나마 시장 진출 시, 가격 면에서는 대체로 중국산과 유사하나 품질 면에서는 미국산이나 유럽산과 거의 동등하거나 우월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에는 파나마의 소비 전반 분야에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기도 함

○ 파나마 수도인 파나마시티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최근 파나마시티에는 유기농 재료로만 만든 메뉴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 12곳이나 생겼으며, 자연분해 기능을 가진 1회용 접시나 컵 등에 대한 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처럼 최근 파나마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친환경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파나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파나마 친환경 정책 및 소비자 특성(친환경 추구 및 중산층의 가격중심 구매패턴)을 모두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파나마의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

- 파나마 법안 Ley492조의 ‘파나마 내 상점에서의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항이 2019년 7월 20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슈퍼마켓·약국·소매점은 12개월 내로, 그 외의 도매점은 24개월 내로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환경 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됨*

* 단계별 시행 확대로 2020년 전면시행(예정)

- 본 법안의 목적은 ‘폴리에틸렌 봉지(1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 가능한 봉지로 대체해 본 봉지의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 제품으로의 대체를 통한 자연환경 개선’임

Tvn 파나마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파나마 해변에서 총 91톤의 쓰레기가 검출됐으며, 그 중 30%를 비닐봉지(쓰레기봉지)가 차지하고 있어 비닐봉지가 파나마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목됨

- 파나마 국회는 해당 법안 시행으로 국내 플라스틱 봉지 사용률이 약 20% 가량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이로 파나마의 자연분해 비닐포장재 시장 및 관련 제품 경쟁이 활발해지고, 다회용 시장바구니(에코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료: 일간지 La nación 기사,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 코스타리카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¹⁴⁾

- 코스타리카는 큰 빈부격차, 미국·유럽 브랜드의 선호도 우세 등 전반적으로 파나마와 유사한 시장특성을 가지고 있음

- 코스타리카의 1인당 GDP는 ‘19년 기준 12,238달러로 중미 5개국 중 파나마 다음으로 높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나, 빈부격차가 매우 큰 국가이기도 함

- '18년 세계은행 자료에서 코스타리카는 48%의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를 기록한 바 있음(WB, 2018)

*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00%이면 완전 불평등 의미

- 그러나 최근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산층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처럼 큰 빈부격차로 인해 코스타리카 소비층은 소비성향이 높고 주로 미국·유럽 등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소득층과 제품 구매결정 시 가격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중산층으로 양분화 되어있음
 - ▶ 따라서 코스타리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가성비를 내세워 가격은 미국·유럽산 대비 저렴하나 품질은 대등하다는 점을 잘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점차 두터워지는 코스타리카 중산층을 타겟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전략적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코스타리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및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임

- 최근 코스타리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브랜드는 현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제품), 더페이스샵(화장품) 등이 있음
 - 특히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미 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미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높은 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음
 - 2011년에는 코스타리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일본 도요타사를 제치고 최초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한국산이 일본산을 능가하고 있음
 - ▶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은 발달한 기술과 최근 발효된 한-중미 FTA를 통해 확대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거래기회의 확대 및 코스타리카 자동차 시장에서의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온두라스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¹⁵⁾

■ 온두라스의 마킬라 지역은 섬유 및 의류봉제업이 잘 발달해 있는 시장임

- 이는 일명 ‘마킬라(Maqiladora) 제도’ 때문인데 마킬라 제도는 기업들이 온두라스 영토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이를 해외로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를 말함
 - 마킬라 제도는 수입 시 관세와 수입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면세 혜택과 임시 허가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원자재, 기계 및 투입재의 수입이 허가되는 혜택 등을 갖고 있음
 - 이와 함께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와 우수한 항만을 기반으로 온두라스의 섬유·봉제 산업은 오래 전부터 잘 발달해옴
 - 현재 온두라스의 섬유·봉제업체는 대서양 연안 항구에 인접한 산 빼드로술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업체들도 인근 자유무역지대에 소재하고 있음
 - 현재 온두라스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의류업체와 5개사의 원단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인원은 약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는 중미 카리브 내 섬유·봉제산업 중 최대 규모에 해당
 - 이로 섬유·봉제산업은 온두라스의 경제 발달을 주도하는 주요 산업에 해당하나,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섬유·봉제산업에 특화되어 있고 전문기술 및 텔레컴, IT 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취약한 특성을 지님
 - ▶ 따라서 온두라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잘 발달한 온두라스의 섬유·봉제시장에서 POS(Point of Sale)시스템 및 IT역량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주에서 납품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틈새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음
- ### ■ 온두라스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미 공군기지가 소재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며 특히 소비분야에서 미국을 모방하는 양태를 보임
- ▶ 따라서 온두라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역시 미국산 제품과 품질은 유사하나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진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엘살바도르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¹⁶⁾

■ 엘살바도르는 대부분의 중미 시장 특성과 같이 주요 소비자가 가격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중산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

-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지역에서 파나마, 에콰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도입한 국가이기도 함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달러가 자국 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뜻함

■ 또한 최근 엘살바도르는 이동통신 시장의 강한 성장으로 인터넷 거래 및 전자화폐, 모바일 결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엘살바도르 시장에서 기능적으로 운용되는 전자화는 Tigo Money 및 MoMo이며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3,000개 이상의 회사 및 1백만명 이상의 개인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는 엘살바도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90% 및 성인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인터넷 시장 및 전자결제 시장의 빠른 성장은 엘살바도르의 젊은 인구 및 증가하는 전문인력 등을 바탕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엘살바도르 무역투자진흥기관인 PROESA 자료(2019)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노동인구는 290만 명이며, 이 중 60%가 39세 미만의 젊은 인구로 신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매년 엘살바도르 노동인구의 교육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해마다 23,000명 이상의 새로운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배출되는데 이 중 21%가 공학 및 기술 분야 전공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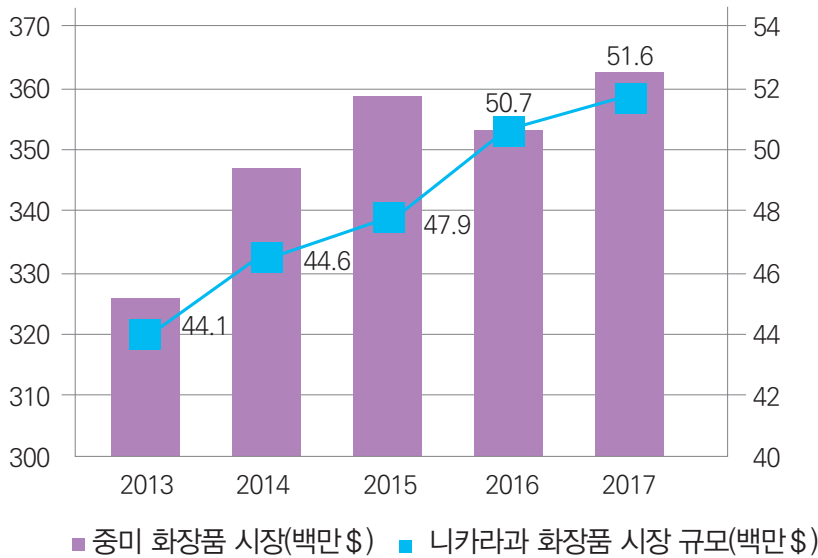
- 또한 엘살바도르는 고질적 사회문제인 폭력조직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CCTV, 치안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함

▶ 따라서 이미 우수한 IT 역량 및 보안 시스템 기술을 잘 갖추고 있는 우리 기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시장인 엘살바도르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니카라과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¹⁷⁾

- 니카라과는 중남미 국가의 최빈국 중 하나지만 꾸준한 국가주도의 성장정책에 힘입어 최근 상류층 및 신흥 중상층 중심의 미용·뷰티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중미 및 니카라과 화장품 시장 규모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7.02.)

- 니카라과 화장품·개인위생(personal hygiene) 관련 용품 시장은 '17년 기준 약 US\$ 51백만 달러 규모로 중미 내 약 14% 비중을 차지함
- 기존 니카라과 미용·뷰티시장은 여느 중미 시장 특성과 같이 미국·유럽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나, 최근에는 수입시장의 다변화 및 K-Beauty 붐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고품질 저가격의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이 니카라과 내 인기 있는 주요 K-Beauty 제품임
- ▶ 최근 니카라과 뷰티 시장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스킨케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문화적으로 색조·메이크업류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색조·메이크업류에 강점을 가진 우리기업은 해당 분야로의 진출 및 시장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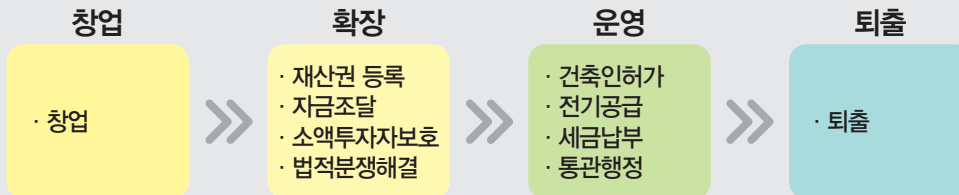
중미 기업경영환경

중미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평가 결과¹⁸⁾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에서 중미 5개국 중 기업 경영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코스타리카(74위), 가장 열악한 곳은 니카라과로 나타남 (142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 정의**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국가 순위로 평가는 190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평가방식**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총 순위를 산정하여 나타냄



- 평가항목** 창업(Starting a Business), 건축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기 공급(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자금조달(Getting Credit), 소액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통관 행정(Trading across Borders), 법적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퇴출(Resolving Insolvency) 등 총 10개 부문
- 장단점** 국가별로 동일 기준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국가 간 순위 비교 시 평가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제한된 부문에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법령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 영역은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대상 190개국 중 중미 5개국의 순위는 코스타리카(74위), 파나마(86위), 엘살바도르(91위), 온두라스(133위), 니카라과(142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한국의 경우 5위)

- 중남미 국가 총 32개국을 기준으로는 멕시코가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도 중남미 국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중남미 국가 기업환경평가(DB 2020)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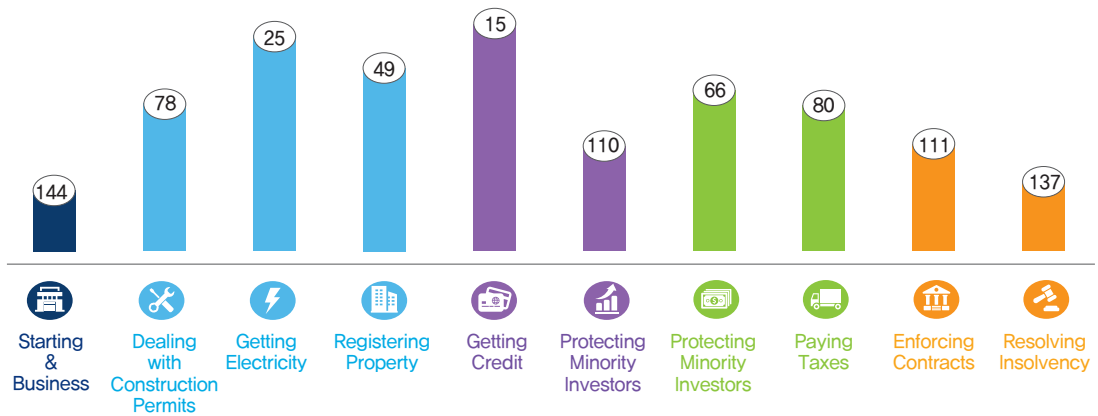
| 국가 | 중남미 국가 순위 | 세계 순위 |
|-------------|-----------|-------|
| 멕시코 | 1 | 60 |
| 푸에르토리코 | 2 | 65 |
| 콜롬비아 | 3 | 67 |
| 자메이카 | 4 | 71 |
| 코스타리카 | 5 | 74 |
| 페루 | 6 | 76 |
| 파나마 | 7 | 86 |
| 엘살바도르 | 8 | 91 |
| 세인트루시아 | 9 | 93 |
| 과테말라 | 10 | 96 |
| 우루과이 | 11 | 101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2 | 105 |
| 도미니카 연방 | 13 | 111 |
| 앤티가 바부다 | 14 | 113 |
| 도미니카 공화국 | 15 | 115 |
| 바하마 | 16 | 119 |
| 브라질 | 17 | 124 |
| 파라과이 | 18 | 125 |
| 아르헨티나 | 19 | 126 |
| 바베이도스 | 20 | 128 |
| 에콰도르 | 21 | 129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 | 130 |
| 온두라스 | 23 | 133 |
| 가이아나 | 24 | 134 |
| 브라질 | 25 | 135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26 | 139 |
| 니카라과 | 27 | 142 |
| 그레나다 | 28 | 146 |

| | | |
|-------|----|-----|
| 볼리비아 | 29 | 150 |
| 수리남 | 30 | 162 |
| 아이티 | 31 | 179 |
| 베네수엘라 | 32 | 188 |

자료 : World Bank

- (코스타리카, 74위) 2019년 코스타리카는 기업환경 평가항목 중 전기 공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코스타리카 종합 및 평가 항목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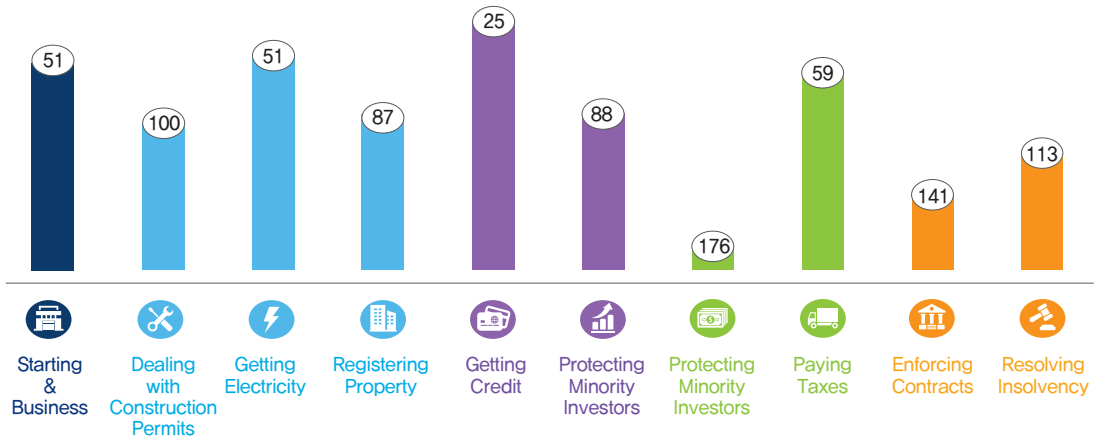


| 구분 | 종합 | 창업 | 건축 인허가 | 전기 공급 | 재산권 등록 | 자금 조달 | 소액 투자자 보호 | 세금 납부 | 통관 행정 | 법적 분쟁 해결 | 퇴출 |
|----|------|------|--------|-------|--------|-------|-----------|-------|-------|----------|------|
| 순위 | 74 | 144 | 78 | 25 | 49 | 15 | 110 | 66 | 80 | 111 | 137 |
| 점수 | 69.2 | 79.9 | 70.8 | 88.9 | 74.4 | 85 | 48 | 78 | 77.6 | 55.2 | 34.6 |

자료 : World Bank

- (파나마, 86위) 2019년 파나마는 기업환경 평가항목 중 자금조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창업, 전기공급, 통관행정 부문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파나마 종합 및 평가 항목별 순위



| 구분 | 종합 | 창업 | 건축 인허가 | 전기 공급 | 재산권 등록 | 자금 조달 | 소액 투자자 보호 | 세금 납부 | 통관 행정 | 법적 분쟁 해결 | 퇴출 |
|----|------|----|--------|-------|--------|-------|-----------|-------|-------|----------|------|
| 순위 | 86 | 51 | 100 | 51 | 87 | 25 | 88 | 176 | 59 | 141 | 113 |
| 점수 | 66.6 | 92 | 68.2 | 83.5 | 65.2 | 80 | 56 | 46.7 | 85.5 | 49 | 3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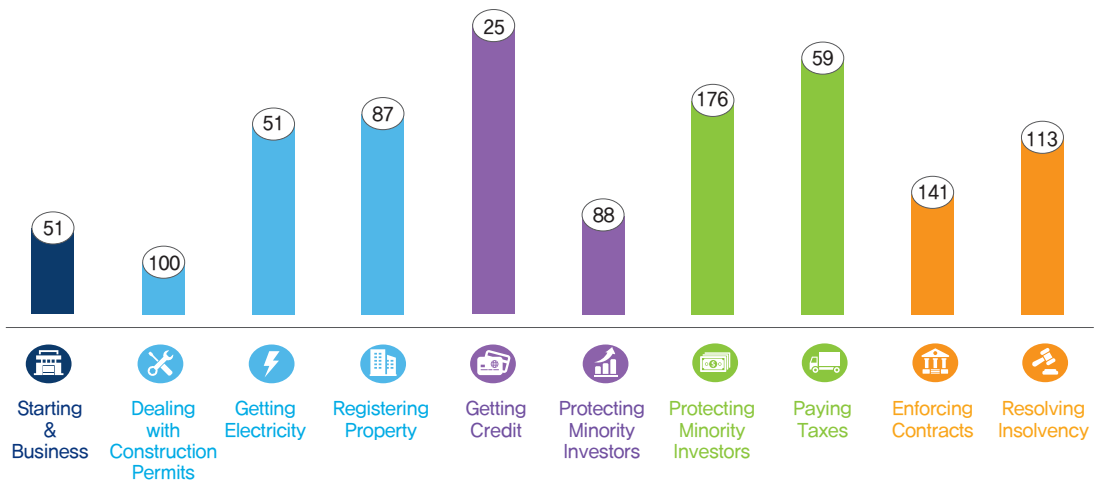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REPUBLIC OF
PANAMA



- (엘살바도르) 190개국 중 91위를 차지한 파나마는 평가항목 중 통관행정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소액투자자 보호, 창업, 건축인허가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음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엘살바도르 종합 및 평가 항목별 순위



| 구분 | 종합 | 창업 | 건축 인허가 | 전기 공급 | 재산권 등록 | 자금 조달 | 소액 투자자 보호 | 세금 납부 | 통관 행정 | 법적 분쟁 해결 | 퇴출 |
|----|------|------|--------|-------|--------|-------|-----------|-------|-------|----------|------|
| 순위 | 91 | 148 | 168 | 87 | 79 | 25 | 140 | 70 | 46 | 126 | 92 |
| 점수 | 65.3 | 78.6 | 52.3 | 74.5 | 66.3 | 80 | 36 | 77.5 | 89.8 | 51.9 | 4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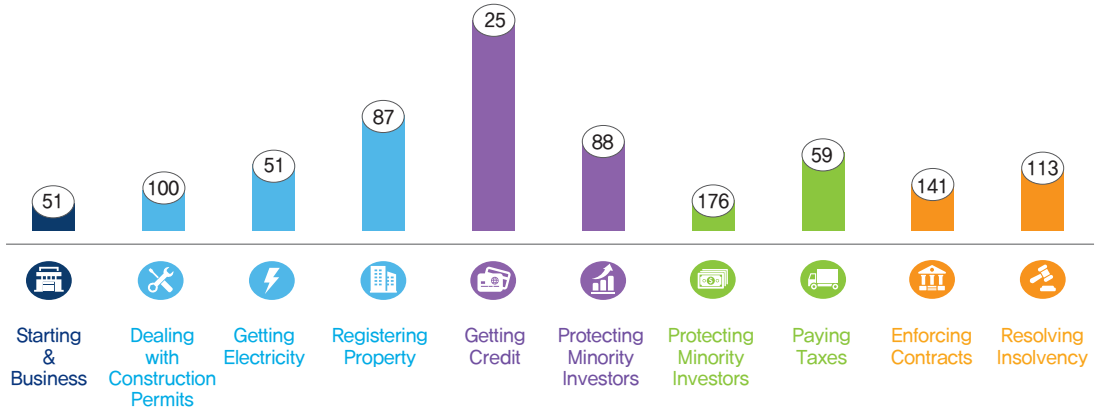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REPUBLIC OF
EL SALVADOR



- (온두라스) 190개국 중 133위를 차지한 파나마는 평가항목 중 자금조달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모든 항목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온두라스 종합 및 평가 항목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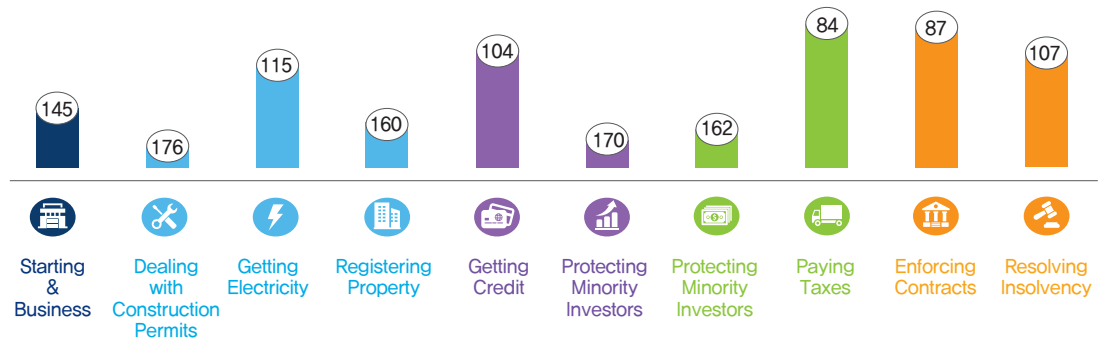
| 구분 | 종합 | 창업 | 건축 인허가 | 전기 공급 | 재산권 등록 | 자금 조달 | 소액 투자자 보호 | 세금 납부 | 통관 행정 | 법적 분쟁 해결 | 퇴출 |
|----|------|------|--------|-------|--------|-------|-----------|-------|-------|----------|------|
| 순위 | 133 | 170 | 158 | 138 | 101 | 25 | 120 | 167 | 130 | 154 | 143 |
| 점수 | 56.3 | 71.4 | 56.2 | 59.9 | 62.3 | 80 | 42 | 49.9 | 64.3 | 44.2 | 32.6 |

자료 : World Bank



- (니카라과, 142위) 2019년 니카라과는 창업, 통관행정 분야를 제외한 모든 기업환경 평가항목에서 7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중미 5개국 중 기업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니카라과 종합 및 평가 항목별 순위



| 구분 | 종합 | 창업 | 건축 인허가 | 전기 공급 | 재산권 등록 | 자금 조달 | 소액 투자자 보호 | 세금 납부 | 통관 행정 | 법적 분쟁 해결 | 퇴출 |
|----|------|------|--------|-------|--------|-------|-----------|-------|-------|----------|------|
| 순위 | 142 | 145 | 176 | 115 | 160 | 104 | 170 | 162 | 84 | 87 | 107 |
| 점수 | 54.4 | 79.6 | 46.3 | 68.3 | 46.4 | 50 | 24 | 52.7 | 77 | 58.6 | 41.1 |

자료 : World Bank



6

중미 RTA 체결현황¹⁹⁾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²⁰⁾

- **정의**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하며,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을 총칭하는 광범위한 개념
- **유형** 서비스부문의 경제통합협정(EIA), 상품부문의 관세동맹(CU) · 자유무역협정(FTA) · 부분적 무역협정(PSA) 등 4개 유형이 있음. 상품부문 협정에서 포괄범위 및 통합수준은 CU > FTA > PSA 순으로 높음

- '20년 9월 현재, WTO RTA DB 기준으로 중미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42개로 확인됨

2020년 9월 기준

중미 RTA 체결 현황

| 연번 | 협정명 | 유형 | 범위 | 발효일자 |
|----|--|-----------|---------------------|-----------|
| 1 |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CU | Goods | 04-Jun-61 |
| 2 | 파나마 - 도미니카 공화국 | PSA | Goods | 08-Jun-87 |
| 3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PSA | Goods | 19-Apr-89 |
| 4 | 중미 - 도미니카 공화국 (참여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4-Oct-01 |
| 5 | 칠레 - 코스타리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15-Feb-02 |
| 6 | 칠레 - 엘살바도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un-02 |
| 7 | 코스타리카 - 캐나다 | FTA | Goods | 01-Nov-02 |
| 8 | 파나마 - 엘살바도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11-Apr-03 |
| 9 | 파나마 - 대만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an-04 |

| | | | | |
|----|--|-----------|------------------|-----------|
| 10 |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CAFTA-DR) (참여국: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미국)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Mar-06 |
| 11 | 과테말라 - 대만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ul-06 |
| 12 | 파나마 - 싱가포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24-Jul-06 |
| 13 | 니카라과 - 대만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an-08 |
| 14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대만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Mar-08 |
| 15 | 파나마 - 칠레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7-Mar-08 |
| 16 | 칠레 - 온두라스 | FTA & EIA | Goods & Services | 19-Jul-08 |
| 17 | 파나마 - 코스타리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23-Nov-08 |
| 18 | EU - CARIFORUM (참여국: 안티쿠아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라질,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29-Dec-08 |
| 19 | 파나마 - 온두라스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9-Jan-09 |
| 20 | 파나마 - 과테말라 | FTA & EIA | Goods & Services | 20-Jun-09 |
| 21 | 콜롬비아 - Northern Triangle (참여국: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FTA & EIA | Goods & Services | 12-Nov-09 |
| 22 | 파나마 - 니카라과 | FTA & EIA | Goods & Services | 21-Nov-09 |
| 23 | 과테말라 - 칠레 | FTA & EIA | Goods & Services | 23-Mar-10 |
| 24 | 코스타리카 - 중국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Aug-11 |
| 25 | 파나마 - 페루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May-12 |
| 26 | 엘살바도르 - 쿠바 | PSA | Goods | 01-Aug-12 |

| | | | | |
|----|---|-----------|------------------|------------------------------------|
| 27 | 중미 - 멕시코 (참여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Sep-12 |
| 28 | 니카라과 - 칠레 | FTA & EIA | Goods & Services | 19-Oct-12 |
| 29 | 파나마 - 미국 | FTA & EIA | Goods & Services | 31-Oct-12 |
| 30 | 파나마 - 캐나다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Apr-13 |
| 31 | 중미공동시장(CACM) + 파나마 가입 | CU | Goods | 06-May-13 |
| 32 | 코스타리카 - 페루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un-13 |
| 33 | 코스타리카 - 싱가포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ul-13 |
| 34 | EU - 중미 (참여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블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Aug-13 |
| 35 | EFTA - 중미 (참여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FTA & EIA | Goods & Services | 19-Aug-14 |
| 36 | 온두라스 - 캐나다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Oct-14 |
| 37 | 파나마 - 멕시코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ul-15 |
| 38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Aug-16 |
| 39 | 온두라스 - 페루 | FTA & EIA | Goods & Services | 01-Jan-17 |
| 40 | 엘살바도르 - 에콰도르 | PSA | Goods | 16-Nov-17 |
| 41 |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 CU & EIA | Goods & Services | 01-Aug-1973(G) / 04-Jul-2002(S) |
| 42 | 중미 - 대한민국 (참여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대한민국) | FTA | Goods & Services | |

자료 : WTO RTA D/B(검색일: '20. 9월 기준)

- (CACM)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은 1961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이 역내 경제통합 및 공동시장 수립을 목표로 발족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파나마는 '13년 추가적으로 참여함
 - 중미공동시장(CACM) 수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성장 추세가 다소 지체되긴 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래 국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오고 있음

중미공동시장(CACM)수출 동향(1990-2019)

[단위 : 백만불]

| 구분 | 총 수출액 | 역내 수출액 |
|-------|--------|--------|
| 1990년 | 4,480 | 624 |
| 2007년 | 19,898 | 5,438 |
| 2008년 | 22,282 | 6,413 |
| 2009년 | 20,208 | 5,388 |
| 2010년 | 23,220 | 6,154 |
| 2011년 | 27,803 | 7,245 |
| 2012년 | 29,636 | 7,474 |
| 2013년 | 29,843 | 8,594 |
| 2014년 | 30,247 | 9,073 |
| 2015년 | 28,055 | 9,210 |
| 2016년 | 27,938 | 9,124 |
| 2017년 | 30,669 | 9,430 |

자료 : SIECA(중미통합체제) 무역통계시스템(<https://www.sieca.int/>)

- (GSTP)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은 개도국 간 상호무역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주관 하에 1976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1988년 유고 각료회의에서 체결된 협정이며 현재 한국, 페루, 유고, 칠레, 태국, 수단, 이란 등 4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중미편
Central America



II

중미 무역현황 및 한-중미 FTA 활용방안

제1절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무역현황

제2절 한-중미 교역현황

제3절 한-중미 FTA

제4절 한-중미 FTA 적용절차

제5절 한-중미 FTA 수출유망품목

1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무역현황²¹⁾

» SIECA 주요 수출국

SIECA 주요 수출국('15~'19)

[단위 : 백만불]

| 순위 | 국 가 | 금액 | | | |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 체 | 28,055.20 | 27,989.00 | 30,644.10 | 31,066.70 | 31,878.70 |
| 1 | 미국 | 9,224.10 | 9,347.50 | 10,017.20 | 10,286.80 | 10,814.00 |
| 2 | 온두라스 | 2,014.50 | 2,027.60 | 2,127.70 | 2,321.60 | 2,262.70 |
| 3 | 엘살바도르 | 2,004.10 | 1,951.50 | 1,988.90 | 2,133.20 | 2,216.30 |
| 4 | 과테말라 | 1,605.50 | 1,596.90 | 1,649.40 | 1,753.90 | 1,897.20 |
| 5 | 니카라과 | 1,633.40 | 1,644.10 | 1,693.50 | 1,562.40 | 1,522.00 |
| 6 | 네덜란드 | 921.4 | 1,233.80 | 1,387.50 | 1,348.70 | 1,385.00 |
| 7 | 코스타리카 | 938.5 | 949.7 | 958.2 | 969.3 | 991.2 |
| 8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651.2 | 725.3 | 1,165.00 | 1,102.00 | 989.5 |
| 9 | 파나마 | 1,014.40 | 975.3 | 1,019.10 | 993.1 | 979.2 |
| 10 | 멕시코 | 704.4 | 782.2 | 830.9 | 836.5 | 886 |
| 11 | 독일 | 705 | 663.2 | 747.1 | 666.6 | 630.2 |
| 12 | 도미니카 공화국 | 573.5 | 531.5 | 474.8 | 539.2 | 553.5 |
| 13 | 스페인 | 257 | 277.4 | 361.1 | 466.9 | 471.5 |
| 14 | 영국 | 386 | 425.1 | 467 | 446.5 | 467.3 |
| 15 | 캐나다 | 390.2 | 364.2 | 376.4 | 362.6 | 437.2 |
| 16 | 이탈리아 | 359 | 397.3 | 383.4 | 388.1 | 415.7 |
| 17 | 일본 | 317.5 | 321.1 | 378.9 | 402.7 | 415.1 |
| 18 | 중국 | 350.1 | 137.3 | 286.1 | 465.4 | 329.2 |
| 19 | 대만 | 204.9 | 234.8 | 322.7 | 267.5 | 290.4 |
| 20 | 푸에르토리코 | 223.8 | 216.4 | 251.4 | 323.8 | 257.1 |
| 21 | 기타 | 24,478.10 | 24,802.20 | 26,886.40 | 27,636.90 | 28,210.30 |

주: '중미'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등 6개국이 해당 순위는 2019년 순(기타 제외).

자료: SIECA 무역통계 시스템

■ **중미경제통합사무국(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이하 'SIECA')* 무역통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미 주요 수출국을 확인한 결과, 중미 지역의 수출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중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진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남**

- '19년 SIECA*는 미국으로 약 108억불을 수출했으며 SIECA의 對미 수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약 92억불 → (2017년) 약 100억불 → (2019년) 약 108억불
- '19년 SIECA 전체 수출금액 중 SIECA 주요 수출국 상위 10개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로 SIECA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9년 SIECA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금액은 약 240억불 정도임
- SIECA 수출 상위 10개국 중 역내국이 역외국보다 더 많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역외국의 금액이 역내국보다 큼
 - SIECA 수출 상위 10개국 중 역외국은 4개(미국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역내국은 SIECA 6개국(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코스타리카 · 파나마) 모두로 역내국이 역외국보다 더 많음
 - 그러나 '19년 기준 SIECA의 역내 수출액은 약 98.7억불, 역외 수출액은 약 142억불로,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역외국이 역내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SIECA 무역통계 시스템」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의 대외 무역에 대한 지역 정보 플랫폼으로 중미 국가의 역내 및 역외 수출입 데이터 및 중미 관세 시스템 (SAC)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제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원은 지역중앙은행, 니카라과 개발 산업 통상부(MFIC), 파나마 국립 통계 조사원(INEC) 등임. 따라서 동 자료에서 칭하는 SIECA는 중미 위 중미 6개국을 의미함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 중미경제통합사무국(이하 SIECA)은 1993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거하여 발족된 조직으로 중미경제통합 과정을 기술 · 행정적으로 보조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중미 역내 관세동맹의 진전 및 중미 지역의 성공적인 경제통합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음

중미 주요 수입국

중미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불]

| 순위 | 국 가 | 금액 | | | |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 체 | 67,882.90 | 65,974.30 | 70,285.30 | 73,996.30 | 72,743.20 |
| 1 | 미국 | 22,716.40 | 21,903.80 | 24,018.40 | 25,658.60 | 24,539.80 |
| 2 | 중국 | 7,998.20 | 7,951.20 | 8,218.40 | 8,922.20 | 8,969.50 |
| 3 | 멕시코 | 5,624.20 | 5,460.50 | 5,544.50 | 5,907.50 | 5,826.30 |
| 4 | 파나마 | 2,504.90 | 2,392.00 | 2,765.40 | 3,119.50 | 2,994.90 |
| 5 | 과테말라 | 2,866.70 | 2,830.20 | 3,045.10 | 2,907.50 | 2,955.50 |
| 6 | 코스타리카 | 2,073.60 | 2,066.00 | 2,181.10 | 2,212.70 | 2,274.80 |
| 7 | 엘살바도르 | 1,923.90 | 1,899.30 | 2,071.50 | 2,087.80 | 2,089.90 |
| 8 | 콜롬비아 | 1,234.50 | 1,269.30 | 1,315.20 | 1,557.00 | 1,534.90 |
| 9 | 독일 | 1,384.20 | 1,338.40 | 1,429.30 | 1,412.60 | 1,364.40 |
| 10 | 일본 | 1,437.70 | 1,465.90 | 1,360.80 | 1,333.90 | 1,344.40 |
| 11 | 스페인 | 1,153.00 | 1,003.70 | 1,148.80 | 1,311.20 | 1,342.90 |
| 12 | 브라질 | 1,080.90 | 1,179.10 | 1,297.10 | 1,228.80 | 1,216.50 |
| 13 | 온두라스 | 1,028.80 | 984.1 | 1,025.70 | 1,126.40 | 1,149.20 |
| 14 | 파나마 | 1,146.50 | 1,059.50 | 1,168.50 | 1,016.50 | 1,007.80 |
| 15 | 인도 | 882.1 | 928.6 | 898.2 | 918.1 | 942.9 |
| 16 | 대한민국 | 1,444.50 | 1,126.10 | 1,299.20 | 981.5 | 916.4 |
| 17 | 니카라과 | 628.2 | 639.4 | 690.3 | 744.2 | 827.3 |
| 18 | 이탈리아 | 749 | 705.3 | 698.7 | 690.9 | 674.1 |
| 19 | 아르헨티나 | 275.7 | 282.8 | 547.3 | 552.8 | 579.6 |
| 20 | 에콰도르 | 232.9 | 253 | 257.3 | 364.1 | 572.7 |
| 21 | 기타 | 58,385.90 | 56,738.30 | 60,980.60 | 64,053.90 | 63,123.80 |

주: 'SIECA'에는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무역통계 시스템에서 집계하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6개국이 해당함. 순위는 2019년 순(기타 제외)
 자료: SIECA 무역통계 시스템

■ SIECA 무역통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SIECA의 최신 수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수입규모는
매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나타남

- 이로 미국은 '19년 기준 SIECA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임
 - '19년 SIECA의 對미 수출금액은 약 108억불, 수입금액은 약 245억불로 SIECA는 미국으로부터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음
- 미국뿐만 아니라 SIECA는 전체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함
 - '19년 SIECA 전체 수입액(약 727억불)은 수출액(약 319억불)의 약 2.3배
- '19년 SIECA 전체 수입금액에서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로 SIECA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년 SIECA 수입 상위 10개국의 수출금액은 약 539억불 정도임
- SIECA 수입 상위 10개국 중 역내국보다는 역외국이 많고, 금액 기준으로도 역외국이 역내국보다 큼
 - SIECA 수입 상위 10개국 중 역외국은 6개(미국·중국·멕시코·콜롬비아·독일·일본), 역내국은 4개(파나마·과테말라·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로 역외국이 역내국보다 많음
 - 수입금액 기준으로도 '19년 SIECA의 역내 수입액은 약 103억불, 역외 수입액은 약 436억불로 역외 수입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SIECA 주요 수입국 중 16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수입액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약 14.4억불 → (2017년) 약 13억불 → (2019년) 약 9.1억불

» SIECA 주요 수출품목²²⁾

SIECA 주요 수출품목('15~'19)

[단위: 백만불]

| 순위 | HS 4단위 | 품명 | 금액 | | | | |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 체 | | | 28,055.20 | 27,989.00 | 30,644.10 | 31,066.70 | 31,878.70 |
| 1 | 9018 | 의료용 기기 | 1,700.80 | 1,996.50 | 2,076.30 | 2,458.10 | 2,774.80 |
| 2 | 0803 | 바나나 | 2,215.40 | 2,392.40 | 2,566.00 | 2,591.30 | 2,578.90 |
| 3 | 0901 | 커피 | 2,530.10 | 2,413.70 | 3,035.10 | 2,670.80 | 2,492.20 |
| 4 | 1701 | 사탕수수당 | 1,368.20 | 1,229.60 | 1,425.90 | 1,148.00 | 1,228.60 |
| 5 | 0804 | 대추야자 | 884.8 | 967.4 | 1,051.80 | 1,109.50 | 1,058.20 |
| 6 | 1511 | 팜유 | 623.2 | 770.6 | 935.9 | 890.8 | 811 |
| 7 | 9021 | 정형외과용 기기 | 422.4 | 507.2 | 644 | 706.8 | 678.9 |
| 8 | 0908 | 육두구 · 메이스 및 소두구 | 245.4 | 231.6 | 368.9 | 438.4 | 654 |
| 9 | 7108 | 금 | 429.2 | 470.3 | 464.3 | 490 | 612.3 |
| 10 | 3004 | 소매의약품 | 585 | 600.6 | 501.4 | 525.5 | 574.5 |
| 11 | 2106 | 기타 조제식료품 | 462.2 | 456.8 | 483.2 | 507.6 | 563.1 |
| 12 | 3923 | 포장용기 · 마개 | 438.2 | 421.3 | 449.1 | 451.5 | 448.4 |
| 13 | 0306 | 갑각류 | 458.8 | 461.4 | 486.2 | 463.9 | 446.8 |
| 14 | 0202 | 냉동 쇠고기 | 361.9 | 289 | 378.2 | 346.4 | 430.6 |
| 15 | 1905 | 베이커리제품 | 325.1 | 329.4 | 342.1 | 355.7 | 374 |
| 16 | 2202 | 음료 | 300.5 | 295.1 | 311.3 | 326.7 | 351.3 |
| 17 | 6109 | 티셔츠 | 277.9 | 292.4 | 276.7 | 329.2 | 308.5 |
| 18 | 6110 | 저지 · 풀오버 · 카디건 | 244 | 257.5 | 293.2 | 301.6 | 278.2 |
| 19 | 4818 | 화장지 · 위생용품 | 192.7 | 197.1 | 218.7 | 234.4 | 275.1 |
| 20 | 2716 | 전기에너지 | 67.4 | 49.7 | 105.5 | 181.5 | 273 |
| 21 | 기타 | | 14,133.10 | 14,629.50 | 16,413.70 | 16,527.70 | 17,212.20 |

주 : '중미'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등 6개국이 해당
순위는 2019년 순(기타 제외).

자료 : SIECA 무역통계 시스템

■ SIECA 무역통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CIECA 최신 수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SIECA 최대 수출품목(HS 4단위 기준)은 의료용 기기(HS 제9018호)로 나타남

○ SIECA의 의료용 기기(제9018호) 수출금액은 '15년 약 17억불이었으나 '19년에는 약 28억불로 크게 상승함

- SIECA에서 의료용 기기(제9018호)를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으로서 해당 기업들은 주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하여 마킬라도라(maquiladora) 지역에 위치한 현지기업을 통해 기기를 조립한 후, 완제품을 미국 등으로 재수출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음

○ 이 외 나머지 SIECA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바나나(제0803호), 커피(제0901호), 사탕수수당(제1701호), 대추야자(제0804호)로 1위 품목인 의료용 기기(제9018호)를 제외한 수출 5대 품목이 모두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SIECA 국가는 오래 전부터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출하여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이 중 2위를 차지한 바나나(제0803호)의 경우 SIECA 국가 중 주로 에콰도르 및 과테말라에서 수출을 진행함

▶▶ SIECA 주요 수입품목

SIECA 주요 수입품목('15~'19)

[단위: 백만불]

| 순위 | HS 4단위 | 품명 | 금액 | | | | |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 체 | | | 67,882.90 | 65,974.30 | 70,285.30 | 73,996.30 | 72,743.20 |
| 1 | 2710 | 석유조제품 | 7,625.00 | 5,916.00 | 8,056.50 | 9,717.10 | 9,482.00 |
| 2 | 3004 | 소매의약품 | 2,520.00 | 2,300.10 | 2,644.00 | 2,739.70 | 2,818.90 |
| 3 | 8703 | 승용자동차 | 2,619.40 | 2,219.70 | 2,681.50 | 2,456.20 | 2,306.70 |
| 4 | 8517 | 통신기기 | 2,020.00 | 1,526.40 | 1,894.30 | 1,887.60 | 1,980.50 |
| 5 | 2106 | 기타 조제식료품 | 786.3 | 780.9 | 895.4 | 937.6 | 1,012.70 |
| 6 | 8704 | 화물자동차 | 1,078.60 | 990.5 | 1,159.90 | 1,092.50 | 993.7 |
| 7 | 1005 | 옥수수 | 745.6 | 667.8 | 704.3 | 820.8 | 951.8 |
| 8 | 2711 | 석유가스 | 598.1 | 626.3 | 892 | 1,028.00 | 913 |
| 9 | 8471 | 자동차료처리기계 | 784 | 676.7 | 781.4 | 798.1 | 812 |
| 10 | 3923 | 포장용기·마개 | 686.5 | 690.6 | 709.3 | 758 | 805.8 |
| 11 | 9018 | 의료용 기기 | 500.3 | 482.7 | 525.7 | 573.5 | 649.5 |
| 12 | 3808 | 소매용 살충제·제초제 | 628.8 | 560.2 | 660.4 | 661 | 622.4 |
| 13 | 8528 | 텔레비전·모니터 | 484.8 | 457.8 | 538.7 | 577.9 | 553.7 |
| 14 | 8544 | 절연전선·케이블 | 476 | 587.9 | 558 | 539.1 | 549 |
| 15 | 8708 | 부분품(8701-8705) | 447.1 | 760.3 | 505.4 | 507.5 | 519.6 |
| 16 | 2304 | 대두의 오일케이크 | 476 | 455.3 | 437.2 | 545.2 | 504.3 |
| 17 | 3002 | 인혈·수혈·백신 | 316.7 | 306 | 356.7 | 376 | 490.5 |
| 18 | 1905 | 베이커리제품 | 454 | 438.7 | 483 | 476 | 479.3 |
| 19 | 4011 | 공기타이어(신품) | 470 | 394.9 | 449.9 | 444.1 | 464.5 |
| 20 | 2309 | 사료용 조제품 | 385 | 350.4 | 435.2 | 490.6 | 450.8 |
| 21 | | 기타 | 24,102.10 | 21,189.20 | 25,368.90 | 27,426.50 | 27,360.70 |

주: '중미'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등 6개국이 해당
순위는 2019년 순(기타 제외).

자료: SIECA 무역통계 시스템

■ SIECA 무역통계 시스템 기반으로 중미 주요 수입품목을 확인한 결과, 최근 중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HS 4단위)은 석유조제품(제2710호)로 나타남

○ SIECA의 석유조제품(제2710호) 수입액은 '19년 기준 약 95억불로 수입액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띠고 있음

- (2015년) 약 76억불 → (2017년) 약 81억불 → (2019년) 약 95억불

- SIECA 국가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석유조제품(제2710호)의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외 나머지 SIECA 수입 상위 5대 품목은 소매의약품(제3004호), 승용자동차(제8703호), 통신기기(제8517호), 기타 조제식료품(제2106호)로 주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승용자동차(제8703호), 통신기기(제8517호) 등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이나 지리적으로 멀고 관세장벽이 존재하여 SIECA 국가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최근 체결된 한-중미 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자동차 및 통신기기 관련 기업들의 SIECA 국가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한-중미 교역현황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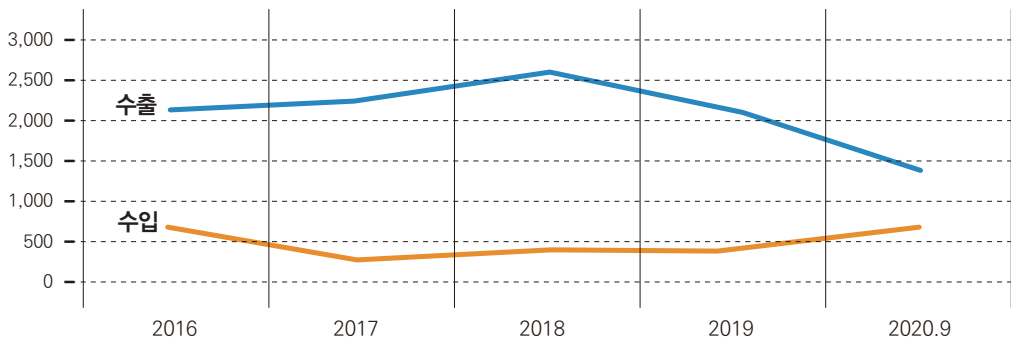
» 한국의 對중미 5개국 수출입 동향(전체)

한국의 對중미 수출입 동향('16-'20.9, 5개국 전체)

[단위: 백만불]

| 구분 | 수출 | | | 수입 | | |
|----------|--------|-------|------|--------|-----|------|
| | 세계 | 한국 | 비중 | 세계 | 한국 | 비중 |
| 2020년 9월 | - | 1,409 | - | - | 530 | - |
| 2019년 | 62,847 | 2,176 | 3.5% | 26,341 | 434 | 1.6% |
| 2018년 | 52,186 | 2,525 | 4.8% | 34,236 | 453 | 1.3% |
| 2017년 | 54,894 | 2,202 | 4.0% | 23,970 | 353 | 1.5% |
| 2016년 | 51,542 | 2,031 | 3.9% | 21,960 | 544 | 2.5% |

[단위: 백만불]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19년 금액 기준, 한국의 對중미 수출액은 약 21.7억불, 수입액은 약 4.3억불로 나타남

- 이는 세계 對중미 수출입 금액의 약 3.5%,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2019년 세계무역에서 한국은 수출 7위, 수입 9위를 차지함('19년 금액기준, IMF)

- 그러나 최근 체결된 한-중미 FTA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對중미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우리나라는 對중미 수출 시 높은 수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했으나, 한-중미 FTA를 통해 평균 95.4%의 관세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됨

» 한국의 對중미 5개국 수출입 동향(국가별)

한국의 對중미 수출입 동향('16~'20.9, 5개국 국가별)

[단위: 백만불]

| | | 수출 | | | | |
|----|-------|-------|-------|-------|-------|----------|
| 구분 | | 2016년 | 2017년 | 2017년 | 2017년 | 2020년 9월 |
| | 전체 | 2,031 | 2,202 | 2,525 | 2,176 | 1,409 |
| 1 | 파나마 | 1,441 | 1,642 | 2,008 | 1,713 | 1,120 |
| 2 | 엘살바도르 | 128 | 160 | 166 | 149 | 73 |
| 3 | 온두라스 | 117 | 126 | 118 | 125 | 81 |
| 4 | 코스타리카 | 217 | 168 | 135 | 119 | 82 |
| 5 | 니카라과 | 128 | 106 | 98 | 70 | 53 |
| | | 수입 | | | | |
| 구분 | | 2016년 | 2017년 | 2017년 | 2017년 | 2020년 9월 |
| | 전체 | 544 | 353 | 453 | 434 | 530 |
| 1 | 코스타리카 | 133 | 139 | 207 | 225 | 127 |
| 2 | 파나마 | 339 | 141 | 153 | 87 | 214 |
| 3 | 온두라스 | 47 | 42 | 52 | 63 | 66 |
| 4 | 엘살바도르 | 13 | 20 | 24 | 39 | 55 |
| 5 | 니카라과 | 12 | 11 | 17 | 20 | 68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금액 기준, 중미 5개국 중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파나마, 최대 수입국은 코스타리카였으며 최대 수출·입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년 한국의 對파나마 수출액(약 17억불)은 중미 5개국 전체 수출금액(약 21.7억불)의 79%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 '19년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수입액(약 4.3억불)은 중미 5개국 전체 수입금액(약 4.3억불)의 52%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對파나마 주요 수출품목

한국의 對파나마 주요 수출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수 출 | | | | | |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금액 | | '18~'19 증감률 |
| | | | 2018년 | 2019년 | |
| 전체 | | | 2,008 | 1,713 | -14.7 |
| 1 |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 859 | 1,041 | 21.2 |
| 2 | 890120 | 탱커 | 890 | 414 | -53.5 |
| 3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상 3,000cc 이하 인 승용자동차 | 41 | 44 | 7.6 |
| 4 |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상 1,500cc 이하 인 승용자동차 | 22 | 20 | -10.8 |
| 5 |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23 | 18 | -21.1 |
| 6 | 240220 | 궤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7 | 17 | 137.7 |
| 7 | 721049 |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판(폭 60cm이상, 아연 을 도포한 것) | 0 | 12 | 6,744.8 |
| 8 | 760612 | 알루미늄 합금의 판·쉬트·대, 정·직사각형 의 것(두께 0.2mm초과) | 0 | 10 | 4,350.7 |
| 9 | 870899 |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제8705호까 지의 차량용) | 9 | 8 | -8.0 |
| 10 | 840999 | 기타 부분품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용) | 7 | 8 | 13.2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파나마 주요 수출 품목은 수송기기, 고무제품, 담배 및 비(帛)금속과 그 제품 등으로 나타남

- 이 중 최대 수출품목인 제8901.90호(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는 '19년 對파나마 수출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약 61%)
- 한편 제7210.49호(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판), 제7606.12호(알루미늄 합금의 판·쉬트·대, 정·직사각형의 것)는 각각 전년대비 증감률이 6,744%, 4,350%로 '19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출품목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출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금액 | | '18~'19 증감률 |
|----|----------------|---|-------|-------|----------------|
| | | | 2018년 | 2019년 | |
| 전체 | | | 135 | 119 | -11.5 |
| 1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26 | 28 | 5.8 |
| 2 | 300220 | 백신(인체 의약품) | 1 | 6 | 476.2 |
| 3 |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 4 | 5 | 12.9 |
| 4 |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6 | 5 | -22.8 |
| 5 |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8 | 5 | -42.0 |
| 6 | 870899 |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 5 | 4 | -7.3 |
| 7 | 731210 | 철강제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3 | 4 | 22.2 |
| 8 | 220299 | 기타 음료 | 3 | 4 | 12.0 |
| 9 | 870210 |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 6 | 4 | -38.4 |
| 10 | 590220 | 폴리에스테르제 강력사의 타이어 코오드 직물 | 2 | 3 | 58.5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출 품목은 수송기기, 의약품, 기타 음료 및 비(卑)금속과 그 제품 등으로 나타남

- 이 중 제8703.23호(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가 2천8백만불로 수출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제3002.20호(인체 의약품 백신)는 전년대비 수출액이 매우 큰 폭(476%)으로 증가하여 수출품목 2위를 차지함

» 한국의 對온두라스 주요 수출품목

한국의 對온두라스 주요 수출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수출 | | | | | |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금액 | | '18~'19 증감률 |
| | | | 2018년 | 2019년 | |
| 전체 | | | 118 | 125 | 6.5 |
| 1 | 854430 | 접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 (자동차·항공기·선박용의 것) | 34 | 36 | 7.4 |
| 2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화물자동차 | 11 | 11 | -0.5 |
| 3 |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6 | 7 | 12.5 |
| 4 | 320416 | 반응성염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5 | 6 | 28.0 |
| 5 | 340211 | 음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 | 3 | 5 | 43.2 |
| 6 | 720916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철이나 비합금강의 판(폭 60cm이상, 코일모양, 냉간압연) | 0 | 5 | 0.0 |
| 7 | 550921 |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합성스테이플섬유사(단사) | 1 | 4 | 263.0 |
| 8 | 340290 | 기타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 | 2 | 4 | 77.8 |
| 9 | 870210 |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 3 | 4 | 20.9 |
| 10 | 300220 | 백신(인체 의약품) | 3 | 3 | 4.7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온두라스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전기기기, 수송기기, 의약품, 화학공업 생산품 및 비(非)금속과 그 제품 등으로 나타남

- 이 중 제8544.30호(접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가 3천6백만불로 최대 수출 품목으로 나타남
- 다음은 자동차류인 제8704.21호 및 제8703.32호의 수출이 많게 나타났으며, 제5509.21호(합성스테이플섬유사, 단사)의 경우 '19년 수출액이 263%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함

»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주요 수출품목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주요 수출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수 출 | | '18~'19 증감률 |
|----|----------------|---|-------|-------|----------------|
| | | | 2018년 | 2019년 | |
| 전체 | | | 166 | 149 | -10.0 |
| 1 | 72106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알루미늄-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60 | 45 | -24.5 |
| 2 | 721049 |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판(폭 60cm이상, 아연을 도포한 것) | 20 | 16 | -19.6 |
| 3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화물자동차 | 16 | 16 | -5.2 |
| 4 | 72107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판(폭 60cm이상,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14 | 13 | -7.0 |
| 5 | 721633 | 철이나 비합금강의 에이치(H)형강 | 3 | 6 | 122.8 |
| 6 | 392329 | 기타 플라스틱제의 포장대[콘(cone) 포함] | 3 | 3 | -1.6 |
| 7 | 291732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 4 | 3 | -25.1 |
| 8 | 870210 |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 1 | 3 | 117.2 |
| 9 | 722599 | 기타 합금강 판(폭 60cm이상) | 0 | 2 | 0.0 |
| 10 | 870899 |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 2 | 2 | 35.9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주요 수출 품목은 비(卑)금속과 그 제품, 수송기기, 플라스틱과 그 제품, 유기화학품 등으로 나타남

- 이 중 제7210.16호(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알루미늄·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가 최대 수출품목으로 나타남
- 한편 제7216.33호(철이나 비합금강이 H형강), 제8702.10호(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는 '19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對니카라과 주요 수출품목

한국의 對니카라과 주요 수출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수 출 | | '18~'19 증감률 |
|----|----------------|--|-------|-------|----------------|
| | | | 2018년 | 2019년 | |
| 전체 | | | 98 | 70 | -28.0 |
| 1 | 600622 | 염색한 면제 기타 편물 | 9 | 9 | -28.6 |
| 2 | 600410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이며, 고무 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 7 | 7 | -35.0 |
| 3 | 840999 | 기타 부분품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용) | 4 | 4 | 3.8 |
| 4 | 580710 | 직조한 섬유재의 레이블·배지 | 4 | 4 | 49.0 |
| 5 | 85371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제어용 보드·패널 | 3 | 3 | 482,341.5 |
| 6 | 283711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 3 | 3 | 4.3 |
| 7 | 600624 | 날염한 면제 기타 편물 | 3 | 3 | -31.7 |
| 8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2 | 2 | -31.5 |
| 9 | 600623 | 상이한 색실의 면제 기타 편물 | 2 | 2 | -55.4 |
| 10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화물자동차 | 2 | 2 | -38.3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니카라과 주요 수출 품목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기계류·전기 기기, 무기화학품, 수송기기 등으로 나타남

- 이 중 제6006.22호(염색한 면제 기타 편물), 제6004.10호(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가
가장 많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제8537.10호(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제어용 보드·패널)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482,341%로 '19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함

» 한국의 對파나마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對파나마 주요 수입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수 입 | | | | | |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금액 | | '18~'19 증감률 |
| | | | 2018 | 2019 | |
| 전체 | | | 153 | 87 | -43.3 |
| 1 | 890120 | 탱커 | 21 | 26 | 24.4 |
| 2 | 260300 | 동광과 그 정광 | 0 | 14 | 0.0 |
| 3 | 890130 | 냉동선 | 8 | 12 | 58.9 |
| 4 | 740400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7 | 10 | 31.9 |
| 5 | 85481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5 | 7 | 32.7 |
| 6 | 850490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부분품 | 0 | 3 | 6,512,259.2 |
| 7 |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 93 | 3 | -96.7 |
| 8 | 030357 | 황새치[자이피어스글래디우스(Xiphiasgladius)] | 1 | 2 | 286.9 |
| 9 | 760200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2 | -35.6 |
| 10 | 090111 |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 1 | 2 | 31.0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파나마 주요 수입 품목은 수송기기, 비(卑)금속과 그 제품, 동물성 생산물, 식물성 생산품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 품목은 제8901.20호(탱커), 제2603.00호(동광과 그 정광), 제8901.30호(냉동선), 제 7404.00호(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임
- 한편 제8504.90호(변압기·정지형 변환기 부분품) 및 제0303.57호(황새치)가 전년대비 수입
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입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수입 | | | | | |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금액 | | '18~'19 증감률 |
| | | | 2018 | 2019 | |
| 전체 | | | 207 | 225 | 8.9 |
| 1 |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 90 | 111 | 23.4 |
| 2 | 901839 | 기타 주사기 · 바늘 · 카테터(catheter) · 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27 | 31 | 18.3 |
| 3 | 090111 |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 14 | 14 | -2.7 |
| 4 | 902190 | 기타 | 10 | 9 | -9.7 |
| 5 | 901890 | 그 밖의 의료용 기기 | 8 | 7 | -13.5 |
| 6 | 853669 |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 2 | 6 | 146.8 |
| 7 | 720449 |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6 | 19.4 |
| 8 | 900130 | 콘택트렌즈 | 3 | 3 | 32.3 |
| 9 | 3006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2 | 3 | 31.2 |
| 10 | 902139 | 기타 인조 인체 부분 | 5 | 3 | -37.2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입 품목은 수송기기, 광학 · 측정 · 의료기기, 의약품, 식물성 생산품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 품목은 제8901.90호(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제9018.39호(기타 주사기 등과 유사한 물품), 제0901.11호(커피, 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있는 것) 등임
- 한편 제8536.69호(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는 전년대비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으로 확인됨

» 한국의 對온두라스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對온두라스 주요 수입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수 입 | | '18~'19 증감률 |
|----|----------------|----------------------------|------------|-----|----------------|
| | | | 2019 금액 | 증감률 | |
| 전체 | | | 52 | 63 | 20.1 |
| 1 | 090111 |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 23 | 23 | -2.6 |
| 2 | 260800 | 아연광과 그 정광 | 0 | 10 | 0.0 |
| 3 | 610910 | 면으로 만든 티셔츠 | 5 | 7 | 40.0 |
| 4 | 740400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2 | 7 | 253.7 |
| 5 | 6110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 | 1 | 2 | 162.4 |
| 6 | 61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티셔츠 | 1 | 2 | 96.9 |
| 7 | 611020 | 면으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 | 1 | 1 | 172.6 |
| 8 | 611430 |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의류 | 0 | 1 | 132.7 |
| 9 | 090112 |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한 것) | 1 | 1 | 56.7 |
| 10 | 611030 | 인조섬유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 | 1 | 1 | -35.9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온두라스 주요 수입 품목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식물성 생산품, 광물성 생산품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 품목은 제0901.11호(커피, 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있는 것), 제2608.00호(아연광과 그 정광), 제6109.10호(면으로 만든 티셔츠) 등임
- 한편 제7404.00호(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제6110.20호(면으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 제6110.90호(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 제6114.30호(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의류)는 모두 '19년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주요 수입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수 입 | | | | | |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2019 | | '18~'19 증감률 |
| | | | 금액 | 증감률 | |
| 전체 | | | 24 | 39 | 63.8 |
| 1 | 170114 | 그 밖의 사탕수수당 | 0 | 15 | 0.0 |
| 2 | 85481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5 | 6 | 24.2 |
| 3 | 090111 |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 5 | 4 | -12.1 |
| 4 | 740400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0 | 3 | 751.2 |
| 5 | 720449 |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3 | -19.9 |
| 6 | 853224 |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축전기(다층) | 3 | 2 | -17.1 |
| 7 | 853221 | 탄탈륨의 고정식 축전기 | 2 | 1 | -43.2 |
| 8 | 61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티셔츠 | 0 | 1 | 97.5 |
| 9 | 610910 | 면으로 만든 티셔츠 | 1 | 1 | -35.6 |
| 10 | 760200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1 | -1.6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주요 수입 품목은 조제식료품, 기계류·전자기기, 식물성 생산물,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및 비(卑)금속과 그 제품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 품목은 제1701.14호(그 밖의 사탕수수당), 제8548.10호(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 등), 제0901.11호(커피, 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있는 것) 등임
- 한편 제7404.00호(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는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751%로 '19년 수입액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對니카라과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對니카라과 주요 수입품목('18-'19)

[단위: 백만불, %]

| 순위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수 입 | | '18~'19 증감률 |
|----|----------------|--|------|------|----------------|
| | | | 2018 | 2019 | |
| 전체 | | | 17 | 20 | 20.5 |
| 1 | 09011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3 | 6 | 150.5 |
| 2 | 26080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3 | 5 | 83.5 |
| 3 | 610910 |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2 | 3 | 13.8 |
| 4 | 7404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 5 | 7 | -70.8 |
| 5 | 611090 |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 1 | 1 | -18.4 |
| 6 | 610990 | 면으로 만든 티셔츠 | 0 | 1 | 128.6 |
| 7 | 611020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 | 1 | -26.1 |
| 8 | 611430 |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 0 | 0 | 55.5 |
| 9 | 090112 | 합성섬유제의 남자용 바지(편직, 크로세) | 0 | 0 | 25.3 |
| 10 | 61103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티셔츠 | 0 | 0 | -19.4 |

주 :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포함,
순위는 '19년 기준

자료 : K-stat

■ '19년 기준 한국의 對니카라과 주요 수입 품목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식물성 생산품 및 광물성 생산품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 품목은 제7404.00호(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제8548.10호(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 등), 제7204.49호(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임
- 한편 제7404.00호(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제6109.10호(면으로 만든 티셔츠), 제8548.10호(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는 '19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3

한-중미 FTA²⁴⁾

» 한-중미 FTA 개관

- 지난 '19년 10월 1일,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 이 부분 발효됨
 - (참여국) 대한민국 및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키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발효국) '18년 2월 21일 한-중미 FTA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니카라과 · 온두라스('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와 발효를 마친 상태이며, '20년 9월 현재 기준 파나마와의 발효만을 앞두고 있음

한-중미 FTA 체결일지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9.10.01 | 한-중미 FTA 부분 발효***** |
| 2018.02.21 | 한-중미 FTA 정식서명 |
| 2017.03.10 | 한-중미 FTA 가서명**** |
| 2016.11.16 | 한-중미 FTA 실질 타결 선언(마나과) |
| 2016.10.24~31 | 한-중미 FTA 제7차 협상 개최(서울) |
| 2016.09.26~30 | 한-중미 FTA 제6차 협상 개최(마나과) |
| 2016.08.8~12 | 한-중미 FTA 제5차 협상 개최(서울) |
| 2016.05.23~27 | 한-중미 FTA 제4차 협상 개최(테구시갈파) |
| 2016.03.29.~04.01 | 한-중미 FTA 6개국, 회기간 회의 개최(서울) |
| 2016.02.22~26 |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샌프란시스코) |
| 2015.11.23~27 | 한-중미 FTA 제2차 협상(엘살바도르) |
| 2015.09.21~25 | 한-중미 FTA 제1차 협상(서울) |
| 2015.07.28~30 | 한-중미 FTA 예비협약(산살바도르) |
| 2015.06.18 |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 2015.04 | 한-중미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
| 2012.10 | 한-중미 FTA 추진 가능성 검토회의 개최(코스타리카) |
| 2011.04 | 공동연구 종료** |
| 2010.10 | 공동연구개시* |

* 공동연구참여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 공동연구참여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과테말라는 협정발효 후 정식 가입절차를 거쳐 참여예정

***** ('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 엘살바도르 발효

자료 : 산통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

- **(의의)**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아시아 국가에서 체결한 최초의 중미 FTA이며,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의의를 가짐
- **(기대효과)** 한·중미 FTA 발효 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①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일자리는 2,534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17.7월, 대외경제연구원)

한-중미 FTA 기대 효과

| 구분(단위) | 발효 5년 후 | 발효 10년 후 |
|------------|---------|----------|
| 실질 GDP(%) | 0.01 | 0.02 |
| 소비자 후생(억불) | 3.7 | 6.9 |
| 고용효과(천개) | 877 | 2,534 |

자료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됨
-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 7천만 달러),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원), 자동차(5천 2백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1. 서문 및 일반규정

- (서문) 서문은 공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포함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시장·투자환경 창출, 각국의 발전단계 고려, 무역·투자장벽 제거, 지속 가능한 발전, WTO상 권리·의무 존중 등
- (일반규정 ①) 일반규정 최초 규정에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목적) 당사국간 무역확대 및 다양화 장려, 상품 및 서비스, 당사국간 무역 확대 및 다양화 장려,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공정한 경쟁 조건 증진, 투자 기회 증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 보호 및 집행, 협정의 이행과 적용·운영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절차 마련,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의 기틀 마련
 - (다른 협정과의 관계) WTO협정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간 협의를 규정
 - (적용범위)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적용되는 조항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중미 국가 간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일반규정 ②) 일반규정 일반적 정의에는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한-중미 FTA 협정문 주요 용어의 정의

| 용어 | 한국 | 중미 |
|-------------------------------------|-------------------|--|
| 국민 (national) |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헌법에 정의된 코스타리카인(엘살바도르인, 온두라스인, 니카라과인, 파나마인) |
| 지방정부 (local level of government) |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 지방자치당국(municipalities) |

| | | |
|------------------------|--|--|
| 영역 (territory) | 1)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1)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파나마)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파나마)가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1) 국제법과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국내법에 따른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영역 |
| 관세 (customs duties) | -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 -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 ※ 관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94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②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 ③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④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

자료 :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2. 상품

■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 | | | | | |
|------------------|-------------|--------|--------|--------|--------|--------|
| 기준 | 우리측 | 중미측 | | | | |
| | |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니카라과 | 파나마 |
| 품목수 | 95.5%~95.9% | 95.20% | 95.10% | 95.60% | 95.90% | 95.30% |
| 수입액 | 98.7%~100% | 98.00% | 98.10% | 93.20% | 99.10% | 99.30% |

자료 :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함
-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 배제)

- **(코스타리카)**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했으며, 특히 코스타리카측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미국, EU에 제공한 것(10년 비선형 철폐)보다 높은 수준인 즉시철폐로 양허함*

*코스타리카측 對韓 자동차 수입 : 1.5억불('12-'14 평균)중미-미국 FTA(CAFTA) : 2009년 발효 / 중미-EU 협력 협정 : 2013년 발효

- **(엘살바도르)** 한국과 엘살바도르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으며, 특히 엘살바도르는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7개 품목에 대해 미국 및 EU에 제공한 것 보다 높은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하고 여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65개 품목은 미국, EU와 동일한 수준인 10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함*

*엘살바도르측 對韓 자동차 수입 : 38백만불('12-'14 평균)중미-미국 FTA(CAFTA): 2009년 발효 / 중미-EU 협력 협정: 2013년 발효-9년 비선형 감축 스케줄: 2%/2%/8%/8%/8%/18%/18%/18%/18%-10년 비선형 감축 스케줄: 2%/2%/8%/8%/8%/8%/16%/16%/16%/16%

- **(온두라스)** 한국과 온두라스 양측 모두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95%,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CAFTA, 중미-EU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함

*서스펜션, 클러치 등 일부 자동차 부품 즉시철폐 및 형강, 타이어, 가전제품 등에 대해 10년 내 철폐

- **(니카라과)** 한국과 니카라과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함

*알로에음료, 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자 즉시철폐 및 형강, 타이어 등에 대해 10년 내 철폐

- **(파나마)** 한국과 파나마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함

*철강제품, 알로에음료, 배전반 등에 대해 즉시철폐 및 에어컨, 타이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10년 내 철폐

3. 서비스 · 투자

-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됨***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 · 적절 · 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함

4.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됨**

-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를 주도해 왔으나, 동 FTA를 계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5.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

-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규범을 명시적으로 도입함
-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함
-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됨
-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6. 원산지 규정 및 절차

■ (원산지 규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품목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함

- **(일반기준)** 원산지 일반기준으로는 (i) 완전생산 기준, (ii)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함
 - 그 외 사용된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미소량(10%) 포함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및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누적기준 등 포함

한-중미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

| 연번 | 내용 |
|----|---|
| 1 |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 2 | 당사국에서 원산지 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 3 |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1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완전생산상품)** 한-중미 FTA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완전생산 상품으로 인정함(한-중미 FTA 협정문 제3.2조)

한-중미 FTA에서의 완전생산 상품

| 연번 | 내용 |
|----|---|
| 1 |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및 이로부터 획득한 상품 |
| 2 |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낚시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 또는 |
| 3 | 어느 한쪽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양식 또는 어로로 획득한 상품 |

| | |
|----|---|
| 4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상품 |
| 5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
| 6 |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
| 7 | 수산물, 이러한 상품만을 사용하여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가공된 상품 |
| 8 | 당사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 9 |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 10 |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TNUR,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 |
| 11 |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人)에 의해 획득되어야 함) |
| 12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수집된 중고품에서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다만,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함)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2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역내부가가치)** 한-중미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RVC) 계산 방식으로 집적법(Build-up) 또는 공제법(Build-down)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한-중미 FTA 협정문 제3.3조)

| 한-중미 FTA에서의 역내부가가치(RVC) 계산방법 | |
|------------------------------|--|
| 연번 | 계산방식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법(Build-down):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제외하여 계산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격(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법(Build-up): 원산지 재료가치를 누적하여 계산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3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중간재)** 중간재에 비원산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최종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최종상품의 원산지 지위 판정 시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중미 FTA 협정문 제3.4조)
- **(불인정공정)**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단순·경미한 공정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한-중미 FTA 협정문 제3.5조)

한-중미 FTA에서의 불인정 공정 주요 유형

| 연번 | 내용 |
|----|---------------------|
| 1 | 상품의 운송·보관을 위한 보존 공정 |
| 2 | 포장의 변경 및 해체 |
| 3 | 직물의 다림질, |
| 4 | 곡물 및 쌀의 탈각 |
| 5 | 도축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5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누적)** FTA로 인한 시장 통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최종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최종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중미 FTA 협정문 제3.6조)

* 향후 양 당사국은 유사누적(양 당사국이 모두 무역협정을 체결한 비당사국과의 원산지 누적)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최소허용수준, 미소기준)**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 상품가치의 10% 이하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중미 FTA 협정문 제3.7조)

* 다만, 제1류~제14류(신선농수산물)에는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지 않음

한-중미 FTA에서의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 품목 | 내용 |
|------------------------|--|
| 제15류~제24류 (가공식품) | 비원산지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적용 |
| 제50류~제63류 (섬유 및 의류) | 필요한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총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제50류~제63류에 대해서는 중량 기준을 적용함)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7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대체가능상품·재료)**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중미 FTA 협정문 제3.8조)

*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한-중미 FTA 협정문 제 3.28조)

- (간접재료) 연료, 공구, 예비부품, 윤활제 등과 같이 상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되지 않음(한-중미 FTA 협정문 제3.13조)
- (직접운송)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 단, 협정문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될 수 있음

한-중미 FTA에서의 직접운송 예외 경우

| 구분 | 예외 내용 |
|-----------------|---|
| 협정문 제3.14조 직접운송 | 다만,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고,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함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14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품목별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최종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중미 FTA 협정문 부속서 3-가)

한-중미 FTA에서의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품목 | PSR |
|-----------|--|
| 화학제품 |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되,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화학공정 규칙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에 합의 |
| 철강 및 철강제품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일부 철강제품은 부가가치기준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 자동차 | 완성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충족 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자동차 부품-새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차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5%를 선택기준으로 도입 |
| 기계, 전기·전자 |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고 부가가치기준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 *가습기, 세습기, 가정용 진공청소기 : CTSH 또는 RVC 30%(집적법) 또는 40%(공제법) 차량용 엔진(가솔린, 디젤) : CTH 또는 RVC35%(집적법) 또는 45%(공제법) |

| | |
|--------------|---|
| 섬유·의류 | <p>대부분 원사기준으로 설정하되, 중미 4개국(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원사 및 원단 사용을 허용*</p> <p>*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 원사·직물(50류-60류)은 완화된 원사기준, 완성의류(61류-63류)는 재단·봉제 기준(CC), 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5504)·사(5403, 5405)는 원사기준 예외로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p> <p>엘살바도르 : 완성의류를 포함하여 섬유·의류(50류-63류) 품목 대부분 원사기준 적용</p> |
| 농축수산물 | <p>대체로 신선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가공농수산물은 세번 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p> <p>*신선농수산물(01류~14류) : 대부분 완전생산기준(WO) 중심(예: 육류, 어패류, 낙농품, 채소, 과일, 곡물, 채유용 종자 등)</p> <p>가공식품(15류~24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중심(예: 식용유, 소시지, 참치 통조림, 식초, 잼, 음료, 발효주, 담배 등)</p>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부속서 3-가;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역외가공지역) 향후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한-중미 FTA 협정문 제3.15조 및 부속서 3-나)**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범위 및 생산품의 원산지 요건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

■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 검증 등을 규정함**

- (원산지 증명)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는 자율증명방식 채택(한-중미 FTA 협정문 제3.17조)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에 한해 작성이 가능함

**한-중미 FTA에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할 때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 연번 | 내용 |
|----|--------------------------------------|
| 1 | 상품이 원산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수출자의 인지 |
| 2 | 상품이 원산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생산자 서면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
| 3 |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 증명을 자발적으로 수출자에게 제공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17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특혜관세 신청)** 특혜관세 신청자는 원산지 증명서류,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한-중미 FTA 협정문 제3.20조)
 - 특혜관세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한-중미 FTA에서 특혜관세 신청자 준수 요건

| 연번 | 내용 |
|----|-----------------------------|
| 1 | 신청자는 신청 시 원산지 증명을 보유해야 함 |
| 2 | 신청자는 신청 시 직접운송 증명서류를 보유해야 함 |
| 3 | 세관 요청 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20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 **(특혜관세 사후신청)** 한-중미 FTA는 특혜관세의 사후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입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한-중미 FTA 협정문 제3.21조)
 - 특혜관세 사후신청 시에도 신청서, 원산지 증명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료보관의무)** 수출자 및 생산자는 상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증빙서류(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들의 구입내역 등)를 원산지 증명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의 경우 각국 국내법에 규정된 자료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해야 함(한-중미 FTA 협정문 제 3.22조)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자의 자료 보관기관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검증)** 수입국의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서면검증, 수출국에 의한 대행검증, 수입국 방문검증을 규정(한-중미 FTA 협정문 제3.24조)

한-중미 FTA 원산지 검증 유형별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서면검증 | 자료 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함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 -경고 후 30일 경과 시 특혜관세 배제 가능 |

**수입국
방문검증**

수입국 방문검증 시 수입국은 검증시행 30일 전 이를 수출자·생산자·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하고 수출자·생산자의 허가를 득해야 함
-수출자·생산자가 30일 이내 허가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가능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24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한-중미 FTA 활용 관련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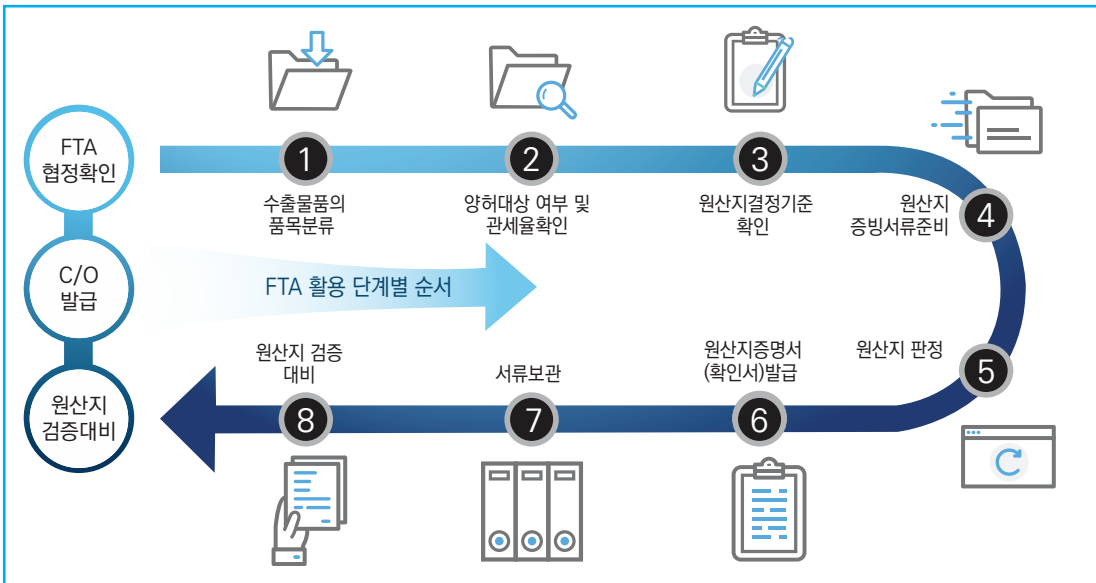
-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 FTA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7개국 15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KOTRA무역관内)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4

한-중미 FTA 적용절차

▶▶ 한-중미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중미 FTA 활용 단계별 순서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는데,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국가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각 협정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한-중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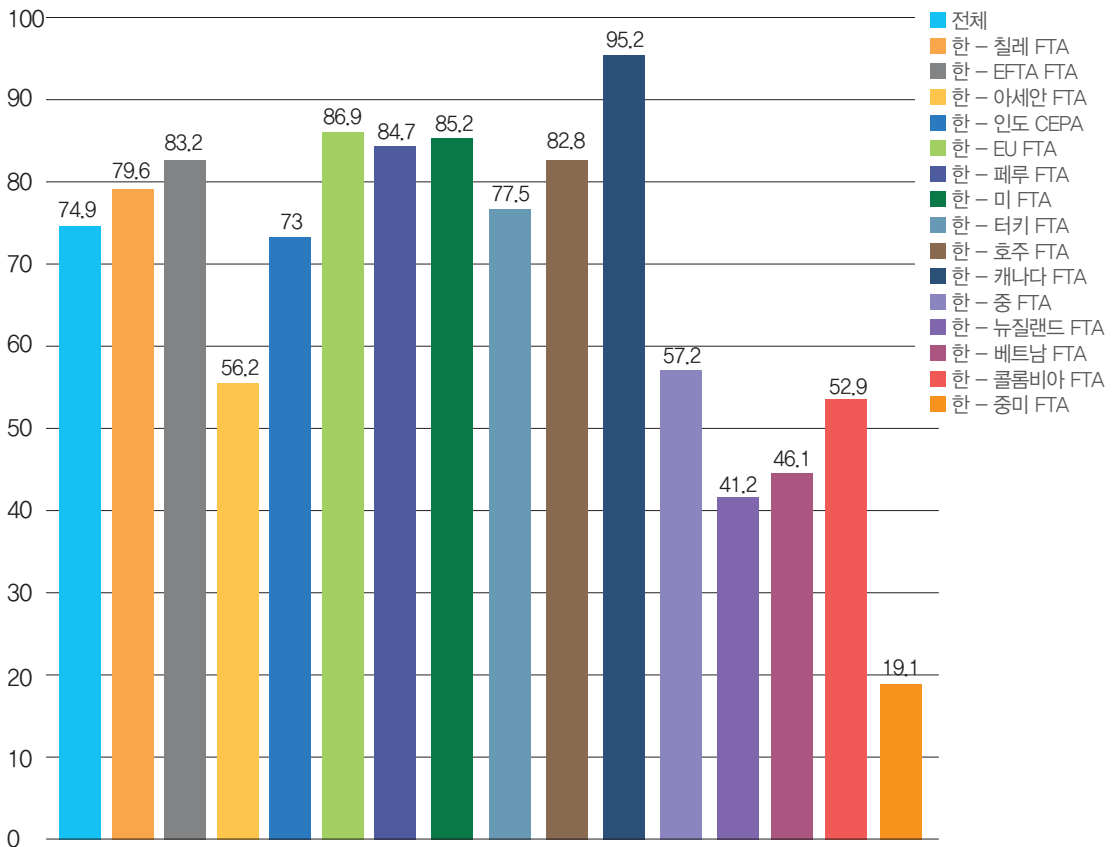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검증을 요청받은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중미 FTA 수출유망품목²⁵⁾

▶▶ 우리나라 FTA 활용 현황(2019)

2019년 우리나라 FTA 협정별 활용 현황('19)



주 : 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국제원산지정보원(2020)

■ 2019년 우리나라의 FTA 전체 활용률은 74.9%로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최근 발효된 한-중미 FTA의 경우 활용률이 19.1%로 다소 낮게 나타남

○ 한-중미 FTA가 '19년 10월 부분발효*된 점을 감안해도 한-중미 FTA 활용률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역 및 FTA 규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 엘살바도르 발효

- 이에 최근 발효된 한-중미 FTA의 활용률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한-중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안내하고자 함

»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선정 방법

① 2019년 중미 5개국별 100대 수입물품 추출(HS 6단위 기준)



② 2019년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에 30만불 이상 수출한 품목 선별



③ 한-중미 FTA 활용 불가능 품목 제외
(기본관세 0% 또는 한-중미 FTA 미양허 품목)



④ - i 이 중 2019년 한-중미 FTA 특혜대상금액은 높았으나 특혜적용금액은 낮게 나타난 주요 품목을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으로 최종 선정*
* 2019년 발효 상태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3개국의 경우

OR

④ - ii 이 중 2019년 우리나라 對중미 수출미화금액 상위 5위 품목을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으로 최종 선정*
* 2019년 미발효 상태인 엘살바도르, 파나마 2개국의 경우

▶▶▶ 對파나마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對파나마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단위 : 천불]

| 연번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파나마 | | | |
|----|----------------|--|-------------|-------------|-------------|-------------|
| | | | 對세계 수입순위 | 對세계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비중 |
| 1 |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 2위 | 5,257,348 | 1,035,566 | 20% |
| 2 | 890120 | 탱커(tanker) | 5위 | 2,471,017 | 414,108 | 17% |
| 3 | 401110 |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신품) | 36위 | 119,876 | 18,303 | 15% |
| 4 | 840999 |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 | 38위 | 103,134 | 7,879 | 8% |
| 5 | 401120 | 버스용·화물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신품) | 59위 | 62,975 | 6,158 | 10% |

자료 : ITC Trade map 및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9년 기준)

주 : 對한국 수입금액순

☑ 對파나마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세율 및 PSR 정보

| HS CODE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 4011.10 | 10% | 10년균등 철폐(E)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11.10호부터 제4011.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4011.20 | 3%/5% | 즉시 철폐(A) | |
| 8409.99 | 10% | 10년균등 철폐(E)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8901.90 | 10% | 5년균등 철폐(E)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901.10호부터 제89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 8901.20 | 15% | | |

» 對코스타리카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對코스타리카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단위 : 천불]

| 연번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코스타리카 | | | |
|----|----------------|---|-------------|-------------|-------------|-------------|
| | | | 對세계 수입순위 | 對세계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비중 |
| 1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5위 | 278,159 | 40,094 | 14% |
| 2 | 87032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14위 | 123,688 | 8,579 | 7% |
| 3 |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 44위 | 52,565 | 6,500 | 12% |
| 4 | 300220 | 인체의학용 백신 | 100위 | 29,257 | 6,198 | 21% |
| 5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16위 | 105,523 | 4,448 | 4% |
| 6 | 731210 | 철강제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88위 | 32,626 | 4,373 | 13% |

자료 : ITC Trade map 및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9년 기준)

주 : 對한국 수입금액순

✓ 對코스타리카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세율 및 PSR 정보

| HS CODE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 3002.20 | 1% | 즉시 철폐(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001.20호부터 제3003.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7312.10 | 1% | 즉시 철폐(A)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07.11호부터 제731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8702.10 | 5%/15% | 즉시철폐(A)/ 10년균등 철폐(E)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1.10호부터 제87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8703.22 | 1%/15% | | |
| 8703.23 | 1%/15% | | |
| 8704.21 | 1%/15% | 즉시 철폐(A) | |

» 對온두라스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對온두라스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단위 : 천불]

| 연번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온두라스 | | | |
|----|----------------|---|-------------|-------------|-------------|-------------|
| | | | 對세계 수입순위 | 對세계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비중 |
| 1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6위 | 145,053 | 12,885 | 9% |
| 2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8위 | 117,001 | 6,205 | 5% |
| 3 | 721070 | 페인팅 또는 바니시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 43위 | 28,051 | 1,391 | 5% |
| 4 | 220290 | 기타 음료 | 39위 | 31,746 | 1,147 | 4% |
| 5 |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축전지 | 46위 | 25,559 | 987 | 4% |
| 6 |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55위 | 23,356 | 719 | 3% |

자료 : ITC Trade map 및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9년 기준)

주 : 對한국 수입금액순

對온두라스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세율 및 PSR 정보

| HS CODE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 2202.90 | 10%/15% | 10년균등철폐(E)/ 15년균등철폐(G)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의 것, 소호 제1211.20호의 것 또는 소호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7210.70 | 0%/15% | 즉시철폐(A)/ 10년균등철폐(E)/ 15년균등철폐(G)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201.10호부터 제72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8702.10 | 5%/10% | 8년균등철폐(K)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1.10호부터 제87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8703.22 | 5% | 즉시 철폐(A) | |
| 8703.23 | 15% | 8년균등철폐(K)/ 10년균등철폐(E) | |
| 8704.21 | 15% | 10년균등철폐(E)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7.10호부터 제850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對엘살바도르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對엘살바도르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단위 : 천불]

| 연번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엘살바도르 | | | |
|----|----------------|---|-------------|-------------|-------------|-------------|
| | | | 對세계 수입순위 | 對세계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비중 |
| 1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12위 | 98,449 | 16,474 | 17% |
| 2 | 2710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2위 | 466,286 | 10,649 | 5% |
| 3 |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10인 이상 승용용 자동차 | 28위 | 47,069 | 2,560 | 5% |
| 4 | 87032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51위 | 32,317 | 2,441 | 4% |
| 5 | 220290 | 기타음료 | 33위 | 44,376 | 2,130 | 4% |

자료 : ITC Trade map 및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9년 기준)
주 : 對한국 수입금액순

☑ 對엘살바도르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세율 및 PSR 정보

| HS CODE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 2202.90 | 10%/15% | 10년균등철폐(E)/ 12년균등철폐(F)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의 것, 소호 제1211.20호의 것 또는 소호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2710.12 | 0%/15% | 10년균등철폐(E)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01.11호부터 제270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8702.10 | 5%/10% | 즉시철폐(A)/ 10년점진철폐(E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1.10호부터 제87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8703.22 | 5% | 10년균등철폐(E)/ 9년점진철폐(J1)/ 10년점진철폐(E1) | |
| 8704.21 | 15% | 10년점진철폐(E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1.10호부터 제87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니카라과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니카라과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단위 : 천불]

| 연번 | 품목코드 (HS 6) | 세부 품명 | 니카라과 | | | |
|----|----------------|---|-------------|-------------|-------------|-------------|
| | | | 對세계 수입순위 | 對세계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금액 | 對한국 수입비중 |
| 1 | 600622 | 염색한 면으로 만든 기타 편물 | 5위 | 241,959 | 9,075 | 4% |
| 2 | 600410 | 폭 30cm 초과, 탄성사 5% 이상 인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67위 | 18,297 | 7,146 | 39% |
| 3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31위 | 35,630 | 1,913 | 5% |
| 4 | 600632 | 염색한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편물 | 11위 | 81,997 | 1,646 | 2% |
| 5 |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 84위 | 14,423 | 1,429 | 10% |

자료 : ITC Trade map 및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2019년 기준)

주 : 對한국 수입금액순

☑ 니카라과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세율 및 PSR 정보

| HS CODE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 6004.10 | 10%/15% | 7년균등철폐(D) |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2.40호부터 제60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6006.22 | 0%/15% | 7년균등철폐(D) |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2.40호부터 제60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 6006.32 | 5%/10% | 7년균등철폐(D)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1.10호부터 제87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8704.21 | 5% | 5년균등철폐(C)/ 7년균등철폐(D)/ 10년균등철폐(E)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7.10호부터 제850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중미편
Central America



Ⅲ

중미 통관·통상환경

제1절 중미 5개국 통관제도

제2절 중미 5개국 관세 종류 및 부과방법

제3절 한-중미 관계 및 외교 현황

제4절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1

중미 5개국 통관제도²⁶⁾

» 중미 5개국 통관 조직

-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통관 업무는 파나마 ·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는 관세청, 엘살바도르는 재무부, 니카라과는 산업자원부 및 관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음

중미 5개국 통관 조직

| 국가 | 통관 조직 | 주요 정보 |
|-------|------------|---|
| 파나마 | 관세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주소 : Avenida Ascanio Villalaz, Panamá, • 전화번호 : +507 506-6400 • 이메일 : soporte.siga@ana.gob.pa • 홈페이지 : https://www.ana.gob.pa/ • 주요업무 : 국경 간 상품, 인력 및 운송수단의 출입과 이동의 통제, 수출입 모니터링 및 검사, 관세 위반 방지 · 조사 · 제재 등 |
| 코스타리카 | 관세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타리카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산하의 관세청(Customs General Directorate) • 주소 : República de Costa Rica San José, Avenida 2da Calle 1 y 3, diagonal al Teatro Nacional • 전화번호 : +506 2359-4647 • 이메일 : omonicacionmh@hacienda.go.cr • 홈페이지 : http://www.hacienda.go.cr/ |
| 온두라스 | 관세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두라스 관세청(Dirección Adjunta De Rentas Aduaneras) • 주소 : San Pedro Sula, Barrio Río Piedras 19 Avenida Sur Oeste, 8 calle, Corporativo 1908 • 전화번호 : +504 2240-0800 • 이메일 : info@aduanas.gob.hn • 홈페이지 : http://www.aduanas.gob.hn/ |
| 엘살바도르 | 재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살바도르 재무부(Gobierno de El Salvador, Ministerio de Hacienda) • 주소 : Anguiatú, El Amatillo, El Poy, La Hachadura, Las Chinamas, San Cristóbal(국경세관), Fardos Postales, San Salvador (San Bartolo), Santa Ana, Bodega El Papalón, CIEX(지역세관) • 전화번호 : +503 2244-3000 / 2237-3000 • 이메일 : clientedgt@mh.gob.sv • 홈페이지 : http://www7.mh.gob.sv/pmh/es/Temas/Aduanas_de_El_Salvador/ |
| 니카라과 | 산업자원부, 관세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카라과 산업자원부(MIFIC) 및 관세청(DGA) • 주소 : Km. 6 Carretera a Masaya • 전화번호 : +505 2248-9300 • 홈페이지 : https://www.mific.gob.ni/ |

자료 : 각국 통관조직 홈페이지

» 중미 5개국 통관 조직

■ (파나마) 파나마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파나마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내용 | |
|--------------------|---|
| 절차 | 상세 내용 |
| ① 물품 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물품이 파나마에 도착하면, 세관 창고에 반입되어야 하며,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의 하역지 관할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해당 장치장에서 반출할 수 있음 |
| ② 수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는 통관사에 의뢰하여 세관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에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on de Liquidacion)을 기입하여 세관총국에 제출함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Entry form)와 함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수입물품의 하역지 관할 세관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관세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파나마 국영은행 등에서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관할세관에 제출한뒤, 수입물품을 반출함 수입통관 시 수입국 세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③ 수입 인증·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세에 관한 법령 이외에 기타법령, 규정에 의해 인증,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해당물품이 적절한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세관에 입증하여야 함 구체적인 타 법령 절차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따라 상이함 파나마 관세청 사이트에서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 ④ 물품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통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보세구역 등에서 실시하며, 플랜트설비 등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을 현장에 파견해 검사함 물품의 검사 결과 수량이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담당한 세관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화물수취인의 확인을 받음 |
| ⑤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관세의 부과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종가세이며, 물품에 따라 종량세 또는 혼합세가 부과됨.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가격 및 수량에 따라 부과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에, 소비세(ITBMS), 특별소비세(ISC)가 부과될 수 있음 소비세(ITBMS) : 일반 7%, 바이오 연료 생산용 에틸알코올과 무수 알코올 (HS 2207.10.11.) 및 기타 에틸알코올 (HS 2207.10.91) : 10% 특별 소비세(ISC) : 주류, 귀금속, 가전제품, 컴퓨터, 자동차, 요트 등 일부품목에 5~100% 부과 |
| ⑥ 수입 허가 및 통관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물품 반입부터 수입허가를 받기까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5일 정도임 |

자료: Tradenavi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고,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수입자는 TIC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코스타리카 수입통관 절차별 상세 내용 | |
|----------------------|---|
| 절차 | 서류 및 내용 |
| ① 물품 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수입통관을 진행함 • 창고로는 수입품 반입 15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하여야 함 |
| ② 수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은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수입, 수출용제품, In-bound 보관제품, 구급품(비상용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품샘플, 긴급패키지, 우편, 면세점 구입 상품, 비상업적 물품, 가족/친지를 위한 소포,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의 통관 시 통관사를 고용할 의무는 없음 • 수입통관 시 수입국 세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 ③ 물품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 검사는 검사자(Vista) 입회하에 실시하며 수입품의 상태, 가격, 중량, 명칭 등이 서류상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 ④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
| ⑥ 수입 허가 및 통관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

자료: Tradenavi

- (온두라스) 온두라스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온두라스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내용 | |
|---------------------|--|
| 구분 | 서류 및 내용 |
| ① 물품 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항구 혹은 국경 입고시 화주에 의해 항구/국경 통관 혹은 공항세관(중앙세관) 통관 여부 세관 통보, 일반적으로 중앙세관 통관 실시 • 500달러(CIF 가격)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 |
| ② 수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UA)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 수입통관 시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③ 물품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됨 |
| ④ 관세 등 납부 및 통관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 온두라스 국세청 웹사이트 (www.sar.gob.hn)에 접속 후 관세(ADUANAS) 카테고리 중 SARAH WEB에서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 신고(Declaracion Manifiesto de Carga)를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 |

자료: Tradenavi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엘살바도르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 내용 | |
|-----------------------|--|
| 절차 | 상세 내용 |
| ① 수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함 수입 신고 시 수입 물품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 ②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화물 검사가 진행됨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화물 검사는 생략될 수도 있음 |
| ③ 관세 등 납부 및 통관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엘살바도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제세별 세율은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정도임 |

자료: Tradenavi

■ (니카라과) 니카라과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니카과라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 내용 | |
|----------------------|---|
| 절차 | 서류 및 내용 |
| ① 납세자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인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해야 함 |
| ② 물품 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선박회사가 수입업자에게 도착 통보(보통 화물도착 후 3-7일 소요) |
| ③ 수입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사는 통관신고서(Declaracion Desalmacenaje)를 작성하여 관세청(DGA: Direccion General de Aduanas)에 제출함 서류가 정확하고 화물이 이미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있을시 검사자가 선정됨 수입 신고 시 수입 물품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 ④ 서류 및 물품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자(Vista)는 수입품의 성질, 가격, 중량, HS Code, 부과될 관세율을 산정한 후 동 서류를 2차 검사자(Verificator: 1차 검사자가 확인한 내용)에 송부함 2차 검사자에 의한 최종서류 확인 후 관세액이 확정되나 자동차 등의 사치품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부(Valoration Department)로 보내져 최종 관세가 확정됨 2차 검사자의 검사 후 관세액 확정시까지의 소요시간은 화물의 내용이나 담당 검사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2-8시간이 소요되며 때에 따라 1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
| ⑥ 관세 등 납부 및 통관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자는 최종 관세액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관세액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자료: Tradenavi

» 중미 5개국 수입통관 필수 구비서류

- 통관 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중미 5개국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우리 기업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통관 서류, 발급방법 등 상세내용을 관련 사이트 및 법규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자는 각국에서 규정된 통관 필수 서류를 세관당국 요청시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 (파나마) 파나마에서 통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등이 있음

파나마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연번 | 서류 및 내용 |
|----|---|
| 1 | 수입신고서 |
| 2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 통관사가 작성하여 관세총국에 제출 |
| 3 | 상업송장 - 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 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함.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만 달러 이상은 75달러임 - 상업송장(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파나마 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쉬핑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
| 4 |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 |
| 5 | 수입업자 납세증명서 -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6 | 관세납부증명서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 |

자료: Tradenavi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통관 시 구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로는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등이 있음

| 코스타리카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
|------------------------|---|
| 연번 | 서류 및 내용 |
| 1 |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 - 수입면장(Import Permits)은 대외무역 단일창구(VUCE 2.0)를 통해 받아야 함 |
| 2 | 상업송장 원본 |
| 3 | 선하증권(B/L) |
| 4 | 수입 허가서 (수입허가품목인 경우에 한함) |
| 5 | 원산지증명서 |
| 6 | 기타 코스타리카 법으로 지정된 요청 서류 (필요한 경우에 한함, 예)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 |

자료: Tradenavi

- **(온두라스)** 온두라스 통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업송장 원본, 선하증권(B/L) 원본, 수입면장(POLIZA) 등이 있음

| 온두라스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
|-----------------------|--|
| 연번 | 서류 및 내용 |
| 1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본 1부 |
| 2 | 선하증권(B/L) 원본 |
| 3 | 수입 면장(POLIZA) |
| 4 | 화물 신고서(MANIFIESTO DE CARGA) |
| 5 | 납세자번호(RTN) 사본 |

자료: Tradenavi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통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음

엘살바도르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연번 | 서류 및 내용 |
|----|----------------------------|
| 1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 2 | 선하증권(B/L) |
| 3 | 원산지증명서(C/O) |
| 4 | 수입 허가서 (수입허가품목인 경우에 한함) |
| 5 | 기타 제 증명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자료: Tradenavi

- (니카라과) 니카라과 통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운송서류(B/L, Airway Bill), 송장, 통관신고서 등이 있음

니카라과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연번 | 서류 및 내용 |
|----|---|
| 1 | 운송서류 (B/L 또는 Airway Bill) |
| 2 | 송장(Invoice) - 스페인어로 작성 |
| 3 | 통관신고서(Declaracion Aduanera) |
| 4 | 수입허가서(Autorizacion de Desalimaenaje) (필요한 경우에 한함, (예) 농축산물, 의약품 등) |

자료: Tradenavi

» 중미 5개국 수입통관 관련 기타 세부사항

■ (파나마) 파나마 수입통관 시 소요기간, 과세가격 등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파나마 수입통관 관련 기타 세부사항 | |
|---------------------|--|
| 구분 | 내용 |
| 소요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에서 일반적인 수입통관 시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 정도이며 해당 기간에 세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 (파나마 세관 업무시간) 평일(월~금) 08시~16시 |
| 통관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수입통관 시 아무 통관 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단, 예외적으로 일반 통관이 아닌 파나마 국제박람회 경우에는 공식 통관 대행업체인 AuturoyAurauz,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음 |
| 과세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는 원칙적으로 CIF 가격(FOB가격+국제운송료+보험료)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음 |
| 기타제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 수입 통관 시 관세 이외에 소비세(ITBM) 및 특별소비세(SC)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

자료: Tradenavi

■ (니카라과) 니카라과 수입통관 시 소요기간, 통관대행, 창고료 등은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니카라과 수입통관 관련 기타 세부사항 | |
|----------------------|---|
| 구분 | 내용 |
| 소요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에서 일반적인 수입통관 시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 정도이며 해당 기간에 세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 (파나마 세관 업무시간) 평일(월~금) 08시~16시 |
| 통관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수입통관 시 아무 통관 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단, 예외적으로 일반 통관이 아닌 파나마 국제박람회의 경우에는 공식 통관 대행업체인 AuturoyAurauz,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음 |
| 과세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는 원칙적으로 CIF 가격(FOB가격+국제운송료+보험료)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음 |
| 기타제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 수입 통관 시 관세 이외에 소비세(ITBM) 및 특별소비세(SC)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

자료: Tradenavi

- (온두라스) 온두라스 수입통관 시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황색 및 적색으로 구분된 통관경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통관 소요시간은 녹색 > 황색 > 적색 경로 순으로 적게 소요됨

| 온두라스 통관경로(canal) 유형 | |
|---------------------|--|
| 구분 | 내용 |
| 녹색 경로 |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 허용 |
| 황색 경로 | 해당 DU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해당 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세율 적용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 허용 |
| 적색 경로 |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 허용 |

자료: Tradenavi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수입통관 시 물품검사 절차 및 검사 결과, 기타 제세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엘살바도르 수입통관 관련 기타 세부사항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물품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시 물품 검사 이전에 서류 심사가 먼저 진행되며, 서류 심사의 결과에 따라 물품 검사의 여부가 결정됨 • 서류 검사 결과는 청색 신호, 황색 신호, 적색 신호로 구분되어 나타나며 청색 > 황색 > 적색 순으로 통관 시간이 짧게 소요됨 | | | | | | |
| | <table border="1"> <tr> <td>청색 신호 (green light)</td> <td>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 가능</td> </tr> <tr> <td>황색 신호 (yellow light)</td> <td>서류상의 검사만 실시</td> </tr> <tr> <td>적색 신호 (red light)</td> <td>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td> </tr> </table> | 청색 신호 (green light) |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 가능 | 황색 신호 (yellow light) |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 | 적색 신호 (red light) |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 | 청색 신호 (green light) |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 가능 | | | | | |
| | 황색 신호 (yellow light) |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 | | | | | |
| 적색 신호 (red light) |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 | | | | |
| 기타제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두라스는 수입 물품에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 및 특별세(AD Valorem)등을 부과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13%), 특별세(30~39%)로 운영 중 •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됨 | | | | | | |

자료: Tradenavi

- (니카라과) 니카라과 수입통관 시 창고 보관기간,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니카라과 수입통관 관련 기타 세부사항 | |
|----------------------|---|
| 구분 | 내용 |
| 창고 보관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에 보관될 수 있는 기간은 물품의 반입일로부터 20일까지임 • 만일 물품이 창고에 반입된 지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세관 당국은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지난 물품을 경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함 |
| 위반 시 제재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의 서류와 물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일정 제재조치가 가해짐 •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의 상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상품의 종량, 명칭, 상태, 서류와 실제상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자(Vista) 입회하에 실시함 • 수입품 검사 결과, 서류 상 기재된 내용과 실제 물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벌과금이 실제 관세액에 추가적으로 부과됨 |

자료: Tradenavi

2

중미 5개국 관세 종류 및 부과방법²⁷⁾

» 중미 5개국 관세의 종류

| 중미 5개국 관세 종류 | |
|------------------------------|---|
| 세율종류 | 상세 내용 |
| 기본관세율 (General Duty Ra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없이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세율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각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 등 특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 파나마의 기본 관세율은 1999년 WTO가입에 따라 대폭 인하되었으며, 현재는 쌀, 우유제품, 자동차 3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0%~10%의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중미공동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회원국 :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에서 채택한 기본관세체제로 중미 5개국 중 이에 해당하는 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의 경우 중미공동관세를 자국의기본관세 체제이자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통합함 • 단, 각 회원국별 입장이 상이한 의약품, 일부 농산물, 주류 등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류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적용을 유보하고 각 회원국의 관세 재량권에 따라 관세를 달리 부과하고 있음 |
| FTA 협정세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FN 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간에는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적용 할 수 있음 • 단, 해당 FTA에서 규정된 물품의 원산지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양당사국 수출입 통관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자료: Tradenavi

☑ 중미공동관세

중미공동시장(영문:CACM/서문:MCCA)을 형성하고 있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은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의 중미공동관세체제(SAC)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일치시킴

» 중미 5개국 관세의 부과

중미 5개국 관세 부과 기준 및 방법

| 구분 | 상세 내용 | | | |
|----------------|---|--|------------------------------------|--|
| 부과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 : HS CODE 10단위 기준 | | | |
| | HS CODE | Description | General | |
| | 0101 |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Horses | | |
| | 0101.21-0000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HS CODE 12단위 기준 | | | |
| | HS CODE | Description | General | |
| 0101 |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 | | |
| 0101.2 | - Horses: | | | |
| 0101.21-000000 | — Pure-bred breeding animals | 0% | | |
| 산출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 : 원칙적으로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물품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함 •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종가세 방식 | | | |
| 우선적용 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공통 | | | |
| | 순위 | 세율종류 | 구분 | 요건 |
| |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비특혜 세율 →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 | - 부과 대상 품목에 해당 - 부과 대상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물품 별로 부과 |
| | 2순위 | FTA협정세율 할당관세 감면세율 | 특혜 세율 →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 또는 0%의 세율 | -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 기본관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 3순위 | 기본세율 | - | - | |

자료: Tradenavi

3

한-중미 관계 및 외교 현황

» 한-파나마 관계²⁸⁾

- (외교관계) 1962년 9월 외교관계를 처음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 한-파나마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주요일지) 1962. 9월, 외교관계 수립 → 1973. 5월, 주파나마대사관 개설 → 1979. 3월, 주한파나마대사관 개설 → 2018. 11월, 제16대 추원훈 대사 부임
 -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 인권 등 공동의 가치 기반 우호협력관계 유지
 - 전통적으로 파나마는 한반도 문제 및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경제관계) 한-파나마는 무역, 투자 진출 및 교민 인프라 공사 수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돈독한 경제관계를 유지 중임

| 한-파나마 경제관계 | | |
|--|--|---|
| 무역(2017년) | 투자 진출/교민 | 인프라 공사 수주 |
| <p>한국-파나마 20억 760만불 (선박,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p> <hr/> <p>파나마-한국 7억 5300만불 (고철, 동괴, 새우 등)</p> <hr/> <p>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18억 5447만불 (편의치적 금액 포함)</p> | <p>총19개 업체 진출 - 투자, 고용</p> <hr/> <p>460여명의 재외동포 - 주로 전, 현직 대기업 지상사원 - 무역업을 주업으로 정착, 주로 섬유, 잡화, 전자제품 취급</p> | <p>현대삼호중공업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에서 소형 밸브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 (1억 9천만불)</p> <hr/> <p>포스코 건설 2018년 8월 미국 AES사의 콜론주 LNG발전소 준공(6억 5천만불)</p> <hr/> <p>2019년도 주요 인프라사업 메트로 3호선(약 23억불) -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SK건설 아동병원(약 5억) - 심상물산, 포스코건설 참여중</p> |

- (동포사회) 현재 파나마에는 한인회, 지상사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주말 한글학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종교단체 등의 한인 동포사회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 한-코스타리카 관계²⁹⁾

- **(외교관계) 한-코 양국은 1954년 수교 이래 54년 간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여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총 8차례의 정상회담 등 양국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꾸준히 유지해옴**
 - 또한 코스타리카는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관련하여 항상 한국을 지지해준 전통 우방국가임
 - 양국은 UN 안보리 개혁 등 국제사회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왔으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녹색성장 등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y)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 중임
 - 한-코는 교역투자 부문에서도 견실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경제, 전자정부, 환경 및 녹색성장, 치안, 직업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오고 있음
- **(문화체육) 한-코 양국간 문화교류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음**
 - 코스타리카에서는 K-POP, 한국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코 교류전 및 코스타리카 유명 밴드 Editus의 공연 등을 개최하여 코스타리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치안협력)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미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치안 문제가 취약하여 코스타리카의 치안안정 노력에 한-코간 협력을 보태고 있음**
 - 코스타리카는 마약생산지(남미)와 소비지(북미)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치안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치안안정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경찰용 버스 제공, 교관 파견, 치안분야 연수 및 세미나 실시 등

- (협정체결) 한-코는 1966년 최초의 협정인 문화협정부터 가장 최근에 체결된 한-중미 FTA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꾸준히 이어옴

한-코스타리카 협정 체결 현황

| 협정명 | 체결일 | 발효일 |
|-------------|--------------|--------------|
| 문화협정 | 1966. 7 | 1971. 7. 4 |
| 무역협정 | 1974. 3 | 1975. 6. 27 |
| 과학기술협력협정 | 1979. 8 | 1981. 9. 18 |
| 사증면제협정 | 1981. 9 | 1981. 10. 22 |
| 투자보장협정 | 2000. 8. 11 | 2002. 8. 26 |
| 범죄인 인도조약 | 2005. 9. 12 | - |
| 봉사단파견협정 | 2007. 5. 3 | 2011. 3. 25 |
| 조세정보교환협정 | 2016. 10. 12 | 2018. 11. 13 |
| 자유무역협정(FTA) | 2018. 2. 21 | 2019. 11. 1 |

자료: Tradenavi

» 한-온두라스 관계³⁰⁾

- (외교관계) 한-온두라스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 옴
 - 온두라스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지하며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확고한 지지를 견지
 - 양국은 1962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며, 특히 2011.2월 로보 대통령 공식방한, 2015.7월 에르난데스 대통령 내외 공식방한을 계기로 관계 강화
 - 온두라스는 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ODA지원 등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경험 공유, 통상, 투자, 기술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희망함

■ (투자·진출) '19년 3월 기준, 온두라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27개 기업으로 파악됨

- 현재 온두라스에 진출한 20여개의 한국기업은 산페드로술라 지역을 중심으로 봉제, 자동차 전장 부품 및 박스 제조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7,800여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온두라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 현황

| 연번 | 상호명 | 설립연도 | 투자유형 | 업종 | 소재지 |
|----|--------------------------|------|--------|-------------------|----------------|
| 1 | HANIL | 1991 | 해외법인 | 공단 및 창고 임대 | Puerto Cortes |
| 2 | S-HONDURAS | 1992 | 현지창업 | 봉제 | Santa Barbara |
| 3 | COTTONWISE | 1995 | 해외생산법인 | 원단 염색 및 편직 | San Pedro Sula |
| 4 | ALAMODE | 1996 | 해외생산법인 | 봉제 | Siguatepeque |
| 5 | SILVER PLAST | 1998 | 현지창업 | 비닐 제조 | San Pedro Sula |
| 6 | OJC | 1999 | 현지창업 | 봉제 | San Pedro Sula |
| 7 | KIT | 1999 | 현지창업 | 봉제 | San Pedro Sula |
| 8 | ASTRO CARTON | 2000 | 현지창업 | 박스 제조 및 공단 임대 | San Pedro Sula |
| 9 | INTEHCO | 2000 | 현지창업 | 옷깃 제조 | San Pedro Sula |
| 10 | DONG-LIM | 2003 | 해외생산법인 | 염료 제조 | San Pedro Sula |
| 11 | AUTOREPUESTO DE HONDURAS | 2003 | 현지창업 | 차량 정비 및 자동차 부품 판매 | Tegucigalpa |
| 12 | KYUNGSHIN-LEAR | 2004 | 해외생산법인 |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 San Pedro Sula |
| 13 | GINO | 2004 | 해외지사 | 무역 | San Pedro Sula |
| 14 | NEO LOGIX | 2006 | 현지창업 | 운송 | San Pedro Sula |
| 15 | ONTEX | 2006 | 현지창업 | 봉제 | San Pedro Sula |
| 16 | WINTEX | 2006 | 현지창업 | 봉제 | San Pedro Sula |
| 17 | NEO INDUSTRIAL | 2007 | 현지창업 | 무역 | San Pedro Sula |
| 18 | SOLATEX(우인화학) | 2007 | 현지창업 | 염료 제조 | San Pedro Sula |
| 19 | SOLTEX | 2013 | 현지창업 | 봉제 | San Pedro Sula |
| 20 | CERAGEM | 2013 | 해외판매법인 | 의료보조기기 판매 | San Pedro Sula |
| 21 | Long Way Fashion | 2013 | 현지창업 | 의류 판매 | San Pedro Sula |
| 22 | PASONINE | 2015 | 해외판매법인 | 중고 타이어 판매 | Tegucigalpa |
| 23 | TOP INFRA | 2017 | 해외지사 | 태양광 시스템 설치 | Tegucigalpa |
| 24 | INVERSIONES IAN | 2019 | 현지창업 | 자동차 부품 판매 | Tegucigalpa |
| 25 | Q-APPAREL | 2019 | 현지창업 | 봉제 | Puerto Cortes |
| 26 | SERTEX | - | 현지창업 | 의류 프린팅 | San Pedro Sula |
| 27 | ARIRANG | - | 현지창업 | 의류 판매 | Tegucigalpa |

자료 :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원문 작성 기준일 : 2019.3.27.)

4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³¹⁾

- **그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미지역은 미주·유럽·아시아 등지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매우 빠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세계적으로 빠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 19로 인한 외출 제한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우 활발해짐
 - 그 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지역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여 '19년 1억 5,500만 명의 전자상거래 이용자와 7조 9,70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높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넓고 거대한 인구로 큰 잠재력을 지닌 중남미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우리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해외 진출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드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함
 -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이미 잘 발달된 IT 기술을 통해 구축되어 있는 기존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높은 초기비용 없이 중미 지역의 **新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다음에서는 중미 진출 또는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 관련 정보를 간략히 제공하고자 함**

» 중미 5개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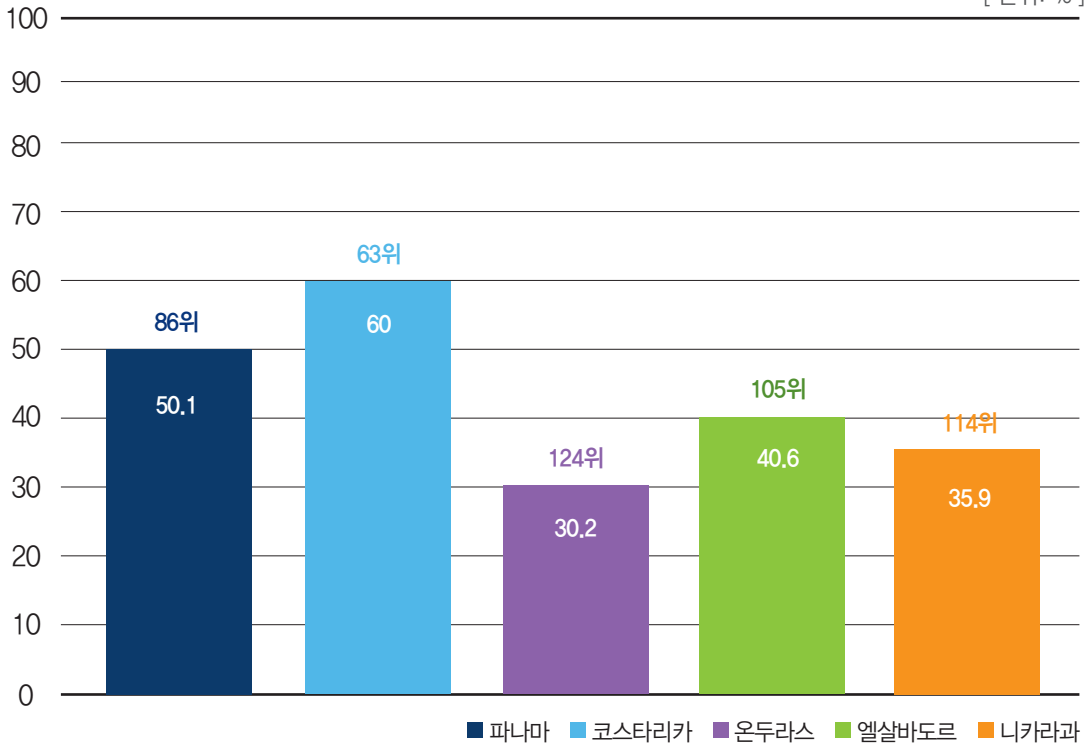
* 중미 5개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파나마·니카라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임

- **(ICT 보급 현황) 세계경제포럼(WEF) 자료에 따르면 중미 5개국의 ICT* 보급 평균 점수는 43.4점이며 이 중 최고 득점 국가는 코스타리카, 최하 득점 국가는 온두라스로 나타남**

*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약자

중미 5개국 ICT 보급 현황(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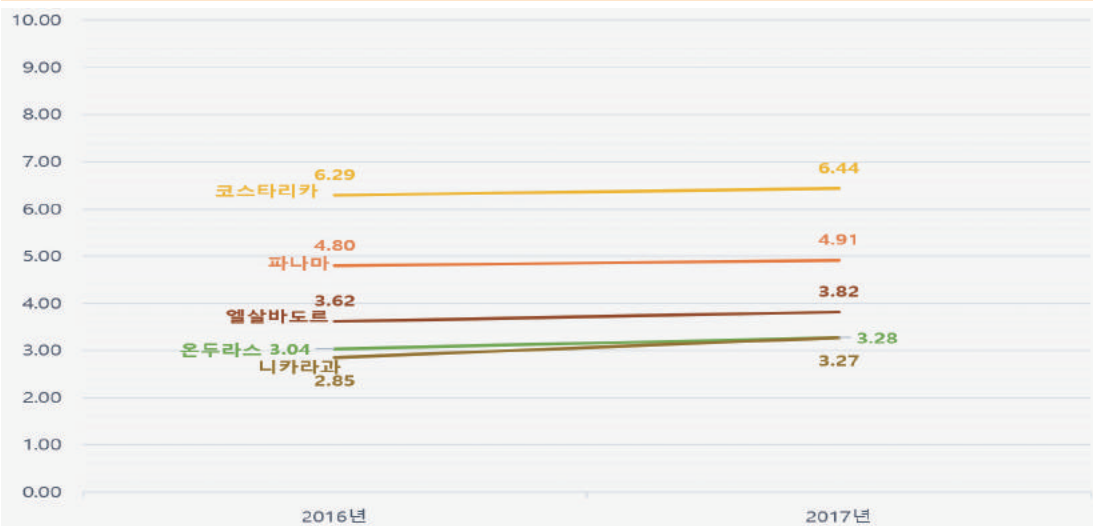
자료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WEF

- 'ICT 보급(ICT Adoption)' 지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매년 전 세계 140여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 중, 특정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 정도를 5가지 지표로 측정하여 1~100까지의 점수로 나타낸 것을 뜻함
- 중미 5개국 중 코스타리카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특히 높게 나타나 ICT 보급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했으며, 온두라스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이동통신 가입자 수,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등 거의 대부분의 부문에서 하위권을 차지하여 가장 낮은 ICT 보급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ICT 보급 분야에서 92.8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2019년 WEF 조사대상국 141개 국 중 1위를 차지함
 -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잘 구축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진출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직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ICT 발전 현황) '17년 기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를 확인한 결과, 중미 5개국의 평균 ICT 발전지수는 4.34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5개국 모두 전년대비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 'ICT 발전 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의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동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나타낸 것으로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지표임
- '17년 기준 중미 5개국의 ICT 발전지수 확인 결과, 코스타리카(6.44) > 파나마(4.91) > 엘살바도르(3.82) > 온두라스(3.28) > 니카라과(3.27) 순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잘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미 5개국의 ICT 발전지수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나 최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ICT 발전 정책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수치가 모두 상승함

중미 5개국 ICT 발전 지수(2017)



주 : 평가는 전년도 통계를 기반으로 함('17년 자료의 경우 '16년 통계를 기반으로 평가)
 자료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7, ITU('18~'19년 미발표)

■ (인터넷 보급 현황) '19년 기준, 중남미 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약 69%로 '19년 세계 평균 인터넷 보급률(5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9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42억 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약 55% 정도임

- 지역별로는 북미(94.6%) > 유럽(87.2%) > 오세아니아(67.4%) > 중동(69.2%) > 중남미(68.9%) > 아시아(53.6%) > 아프리카(3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남미 시장의 인터넷 보급률은 북미, 유럽 등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그 외 지역과는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임

■ **(SNS 이용 현황) 특히 중남미 지역의 SNS 사용자 비중은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Digital in 2020'에서 '16년 기준 지역별 인구 대비 SNS 사용자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평균 SNS 사용자 비중은 49%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북미 69% > 중남미 65% > 유럽 55% > 캐리비안 51% > 아시아-태평양 50% > 중동 48% > 아프리카 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남미 지역을 보다 자세히 보자면 중미는 64%, 남미 67% 정도였으며 이는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임

중미 5개국 ICT 발전 지수(2017)

[단위: 명, %]

| 순위 | 국가 | 인구 | 인터넷 이용자 | 인터넷 보급률 | 페이스북 가입자 |
|-----------|-------|------------|------------|---------|------------|
| 중미5개국(전체) | | 31,229,299 | 18,459,061 | 59.1 | 14,500,000 |
| 1 | 코스타리카 | 4,953,199 | 4,296,443 | 86.7 | 3,200,000 |
| 2 | 파나마 | 4,162,618 | 4,162,618 | 69.7 | 2,000,000 |
| 3 | 엘살바도르 | 6,411,558 | 3,700,000 | 57.7 | 3,400,000 |
| 4 | 니카라과 | 6,284,757 | 2,700,000 | 43 | 2,500,000 |
| 5 | 온두라스 | 9,417,167 | 3,600,000 | 38.2 | 3,400,000 |

주 : 순위는 인터넷 보급률 순
 자료 : Internet World Stats(2019.6)

■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19년 UNCTAD가 발표한 B2C(기업고객간, Business-to-Customer) 전자상거래(e-commerce) 지수에 따르면, 중미 5개국 중 온라인 쇼핑에 가장 친화적인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나타남**

중미 5개국 B2C 전자상거래(e-commerce) 지수(2019)³³⁾

[단위: 명, %]

| 2019년 순위 | 국가 | ① 온라인 금융계좌 보유 | ② 개인 인터넷 사용 | ③ 우체국 (UPU) 신뢰도 | ④ 인터넷 서버 보안 | ⑤ 전자 상거래 지수 | ⑥ 2018년 순위 |
|----------|-------|------------------------|----------------------|--------------------------|-------------------|----------------------|------------------|
| 61위 | 코스타리카 | 74 | 68 | 63 | 51 | 64.1 | 71위 |
| 83위 | 파나마 | 58 | 46 | 68 | 29 | 50.4 | 87위 |
| 99위 | 온두라스 | 32 | 45 | 41 | 52 | 42.4 | 106위 |
| 110위 | 엘살바도르 | 34 | 30 | 42 | 42 | 37.2 | 96위 |
| 132위 | 니카라과 | 28 | 31 | 40 | 2 | 25.2 | 127위 |

주 : UNCTAD B2C 전자상거래 지수(⑥)는 ①, ②, ③, ④ 각 항목 총점의 평균이며 만점은 100점임

자료 : B2C E-commerce index 2019, UNCTAD(원자료 지수 산출 항목 출처는 참고문헌 참조)

- 'B2C 전자상거래 지수(Business-to-Customer e-commerce index)'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매년 전 세계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계좌 보유율, 인터넷 사용률, 우체국(UPU) 신뢰도, 인터넷 서버 보안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기업고객 간 전자상거래 수준을 100점으로 산정하여 나타낸 것을 말함*

*19년 B2C 전자상거래 지수 주요 순위 : △1위 네덜란드 96.4 △2위 스위스 95.5점 △3위 싱가포르 95.1 △4위 핀란드 94.4 △5위 영국 94.4 △6위 덴마크 94.2 △7위 노르웨이 93.4 △8위 아일랜드 93.3 △9위 독일 92.9 △10위 호주 91.8 등(△한국은 89.4점으로 19위를 차지)





■ 중미 5개국은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발전 수준에 비해 비교적 높은 무선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신규 시장에서 초기에 입지를 잘 구축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는데, 우리 기업의 경우 기존에 잘 구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신규 시장 확대 및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중미 주요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³⁴⁾

- 중미 지역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은 아직 발달 초기에 있어 대부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Amazon, eBay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외 중미 지역에서 특히 인기 있는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함

중미 주요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

| 구분 | 상세 내용 |
|---|---|
|  <p>Encuentra2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2005년 • 본사 : 스위스 • 서비스 지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스위스, 니카라과 등 • 주요 분야 : 온라인 쇼핑, 마켓 플레이스, 전자상거래, 광고, 마케팅 및 디지털 미디어, 부동산 등 • 특징 : 부동산, 자동차, 중고거래 등 다양한 물품의 온라인 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중미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 최근('20.7월) 또 다른 중미지역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이었던 OLX가 중미지역 4개국(과테말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에서 Encuentra24와 합병을 발표함 • URL : http://www.encuentra24.com |
|  <p>MercadoLibr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1999년 • 본사 : 아르헨티나 • 서비스 지역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중남미 지역 18개 이상 국가에 지사 설립) • 주요 분야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온라인 경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전자상거래 등 • 특징 : 아르헨티나 기업인 MercadoLibre(메르카도 리브레)는 중남미 지역 전자상거래 분야를 석권하여 중남미 지역의 Amazon(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함. '18년 미국 인터넷 마케팅업체 Comscore 조사 결과에 의하면 MercadoLibre는 중남미 지역 온라인 구매자 중 47.4%(5,62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꼽히는 Amazon이 중남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6.6%(1,972만명)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임 • URL : https://ideas.mercadolibre.com/ |
|  <p>Glovo</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2015년 • 본사 : 스페인 • 서비스 지역 : 스페인,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전 세계 19개국 690개 이상의 도시) • 주요 분야 : 주문형 택배 서비스, 모바일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식료 및 잡화류, 다중 카테고리 라이프 스타일 앱 • 특징 : 스페인에서 설립된 Glovo는 지금까지 전세계 22개국 및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1억건 이상의 주문을 달성했으며, 현재 유럽에서 설립된 최대 주문형 플랫폼으로 중미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음 • URL : https://glovoapp.com/ |
|  <p>Appetito2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2015년 • 본사 : 파나마 • 서비스 지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등 • 주요 분야 : 전자상거래, 온라인 배송, 푸드 딜리버리,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 특징 : 파나마의 전국 13개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플랫폼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지역 비즈니스 및 레스토랑 프로모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URL : https://www.appetito24.com.pa/ |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중미편
Central America



IV

우리기업의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애로와 그 대응방안

제1절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 애로사항

제2절 주요 애로 유형별 사례 및 대응방안

1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 애로사항

»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 핵심애로 추출

- '19년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으로 수출을 진행한 적이 있는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 시 애로사항을 수집한 결과, 총 25개 업체에서 다음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우리 기업의 對중미 수출 및 FTA 활용 주요 애로사항 | | |
|--------------------------------|---------------------|--|
| 구분 | 애로유형 | 애로내용 사례 |
| 1 | 한-중미 FTA 에 대한 정보부족 | 한-중미 FTA 활용 가능 품목 및 적용 절차 등 한-중미 FTA 상세 정보 수집의 어려움 |
| 2 | 수입국-수출국 간 품목분류 상이 |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
| 3 | 중미 국가별 관세율 및 부가세 확인 | 중미 각 국가별 관세율 및 부가세의 확인 방법 |

자료 : 25개 기업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수집된 중미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① 한-중미 FTA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수입국-수출국 간 품목분류 상이, ③ 중미 국가별 관세율 및 부가세 확인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다음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및 한-중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집된 주요 애로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애로별 사례 및 대응방안³⁵⁾

1. 한-중미 FTA 관련 정보 부족

☑ 관련규정

- 「한-중미 FTA 협정문」 부속서 2-나
 - 한-중미 FTA에서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대상 품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온두라스로 수출을 하는 해당 기업이 경우, 한-중미 FTA 협정문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양허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해야 함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20조
 - 협정문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를 확인한 결과, 기업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즉시 철폐 대상으로 협정 적용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혜관세를 신청하고자 할 것임
 - 특혜관세의 신청은 대개 협정별로 공통적인 절차로 진행되나 세부 진행 내용은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문을 잘 확인해야 함
 - 한-중미 FTA에서는 특혜관세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신청자는 (1) 원산지 증명을 보유할 것, (2) 직접운송 증명서류를 보유할 것, (3) 세관 요청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신청자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해결방법

- 우리 관세청 및 FTA 관련 기관에서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므로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① FTA 관련 정보 참고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YES FTA 교육지원센터: <http://www.yesftaedu.or.kr>
- FTA-PASS(활용) : <https://www.ftapass.or.kr/psr/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FTA 활용과 관련해서는, 각 협정별로 협정 적용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문 전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음

① 한-중미 FTA 협정문 전문 확인 링크

-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_america/2/

- 또한 한-중미 FTA에서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특혜관세의 사후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한-중미(온두라스) FTA 발효일 이후부터 최근 1년 이내의 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사후신청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특혜관세 사후신청 신청서, 원산지 증명, 기타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특혜협정의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함

2. 수입국-수출국 간 품목분류 상이

☑ 애로사항

- 온두라스로 수출 중인 Y기업은 수출 물품 HS CODE를 ○○으로 신고하였으나, 온두라스 품목 분류 체계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XX로 분류되며 수입국과 수출국 간 HS CODE가 상이하어 수입 서류에 어떤 HS CODE를 기재할지 판단하기 어려움

☑ 관련규정

- 동일 물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품목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따름

☑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상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신고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대국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식 서류는 최초 C/O 발행 시에 제출하고, 이후 동일 물품의 C/O 신청 시에는 제출의 생략이 가능함

자료: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18.07.09.)

✓ 해결방법

- 특혜협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통관 전에 먼저 해당 물품의 수입국-수출국 HS CODE를 모두 확인해야 함
 - 확인 결과, 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과 수출국 간 HS CODE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일단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에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를 기재하는 것이 좋음
- 만약 수입국-수출국간 HS CODE가 상이할 때 수출국 HS CODE를 기재하여 통관 및 협정 적용 신청을 진행 한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오발급 또는 물품 및 서류 간 불일치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수출자는 해당 HS COD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제출대상 서류로는 상대국 HS CODE를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품목 번호 확인서,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협정 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 등이 있음
- 원산지 검증시 대응
 - 품목분류 상이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코드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되어야 함
 - 수입국 HS코드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검증시 불충족 위험이 있음을 유의할 것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 ① 공식서류로 HS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② 우리나라 HS코드로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코드로 추가 인증 처리
 - 다시 말해, 상대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HS코드로 인증을 받은 후 상대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3. 중미 국가별 관세율 및 부가세 확인

✓ 애로사항

- 중미 지역에 HS 8521.90.9000, 8526.91.3020, 8527.29.99, 8703.23.6910, 8703.22.7000 등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M사는 최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로의 추가 진출을 위해 해당 품목을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로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율과 부가세를 확인하고 싶음

✓ 관련규정

- 한-중미 FTA 협정 적용시 관세는 한-중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과되며, 일반 수입시에는 파나마의 경우 기본관세, 코스타리카의 경우 MFN 관세가 부과됨

✓ 해결방법

- 파나마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DAI) 및 부가세(ITBM)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파나마 수입품목 관세율 및 부가세 확인 링크

· 파나마 관세청(<https://www.ana.gob.pa/>)

- 코스타리카의 경우, 관세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CIF 수치를 알지 않는 이상 명확한 관세율을 구하기 어려움
- 그러나 코스타리카 재무부 산하 관세청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S CODE별 관세율 조회를 통해 대략적인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는 있음

코스타리카 수입품목 관세율 링크

· <http://www.hacienda.go.cr/tica/consultas/hdbaranc.aspx>

- 또한 다음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수입세금(DAI, SC, IVA 등) 및 적용방법(공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동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① 각종 수입세금 및 적용 방법 확인 링크

· <http://www.infoweb.co.cr/arancel/>



참고 문헌

- 1)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pa-ko/index.do>);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8.05.)
- 2)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r-ko/>); 위키백과 '코스타리카' 검색결과(<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C%8A%A4%ED%83%80%EB%A6%AC%EC%B9%B4>)
- 3)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hn-ko/>); 위키백과 '온두라스 렘피라' 검색결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A8%EB%91%90%EB%9D%BC%EC%8A%A4_%EB%A0%98%ED%94%BC%EB%9D%BC)
- 4)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sv-ko/index.do>); 위키백과 '니카라과' 검색결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A8%EB%91%90%EB%9D%BC%EC%8A%A4_%EB%A0%98%ED%94%BC%EB%9D%BC)
- 5)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ni-ko/>); 니카라과의 경제 동향과 통상 및 투자 그리고 협력 환경에 관한 연구, 유영식 · 윤준모,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2, December(2017), pp. 145-154
- 6) The World Bank_Databank_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7)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main.do?cate=1>); KOTRA 해외시장뉴스(2007.05.31.)
- 8)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pa-ko/index.do>); EIU Country Report; La Prensa紙 (2020.08.06일자, 09.08일자);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https://energia.mofa.go.kr/>)
- 9)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r-ko/>);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https://energia.mofa.go.kr/>); La Prensa紙(2020.09.16.일자)
- 10)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hn-ko/>)
- 11)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sv-ko/index.do>)
- 12)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ni-ko/>)
- 13) KOTRA 국가·지역정보(파나마);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파나마, 플라스틱 비닐봉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 나"(<http://www.waterindustry.co.kr/overseas/overseas04.php/overseas04.php?ptype=view&idx=76977&page=15&code=overseas04>);
- 14) KOTRA 국가·지역정보(코스타리카);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8.04.)
- 15)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국제노동협력원
- 16) 엘살바도르 시장 진출에 관한 고찰 : 산업 및 통상 환경을 중심으로, 유영식 · 윤준모(2019); 2019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시장 동향조사 엘살바도르편,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2019.12.24.)(<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753>);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7.24.)
- 17) KOTRA 국가·지역정보(파나마);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7.02.)
- 18)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 19)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설명
- 20)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가속...역내 가치사슬 상위부문 선점해야", CBS 노컷뉴스 (2019.05.06.)
- 21) SIECA 무역 통계 시스템(<http://www.sec.sieca.int/>)
- 22)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KOTRA(2018)
- 23) ITC Trade map(<https://www.trademap.org/>); K-stat(<http://stat.kita.net/>); Ciel HS(<https://www.clhs.co.kr/>)
- 2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02.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09.30.);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9)
- 25) 관세청 수출입통계(2019); ITC Trade map; 한-중미 FTA 협정문; Ciel HS(<https://www.clhs.co.kr/>)
- 26) 파나마 관세청(<https://www.ana.gob.pa/>)
- 27) 파나마 관세청(<https://www.ana.gob.pa/>)
- 28)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pa-ko/index.do>)
- 29)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r-ko/>)
- 30)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hn-ko/>)
- 31)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9.24.); DATAREPORTAL(<https://datareportal.com/digital-in-costa-rica>); 세계은행(The World Bank); EUROMONITOR INTERNATIONAL(<https://www.euromonitor.com/>)
- 32)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main.do?cate=6&web=>);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홈페이지(<https://www.weforum.org/>); ITU 통계 홈페이지(<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default.aspx>);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7, ITU; Digital in 2020; Internet World Stats(2019.6);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UNCTAD B2C E-COMMERCE INDEX 2019;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신산업 협력센터 '라틴 인더스트리 NOW'(<http://energia.mofa.go.kr/>)
- 33) ① World Bank(https://globalindex.worldbank.org/#data_sec_focus), ②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 ③ Universal Postal Union, UPU(<http://www.upu.int/en/the-upu/strategy/2ipd.html>), ④ Netcraft retrieved from World Bank(<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각 항목은 2018년 또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함
- 34) 중남미 주요국 온라인 시장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2015), KOTRA;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9.24.); encuentra24 홈페이지(<https://www.encuentra24.com/>); MercadoLibre 홈페이지(<https://ideas.mercadolibre.com/>); Glovo 홈페이지(<https://glovoapp.com/>); Appetito24 홈페이지(<https://www.appetito24.com.pa/>)
- 35) 한-중미 FTA 협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산통부 FTA 강국 FTA KOREA(<http://www.fta.go.kr/>);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18.07.09.), 관세청; 파나마 관세청(<https://www.ana.gob.pa/>); 코스타리카 관세청 포털(<http://www.hacienda.go.cr/tica/consultas/hdbaranc.aspx>)